

빅데이터 정보 이용 범위에 대한 법적 연구: 개별 정보별 분석

2022. 4.

정훈 · 김재경 · 이나현



빅데이터 정보 이용 범위에 대한 법적 연구: 개별 정보별 분석

2022. 4.

정훈 · 김재경 · 이나현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 훈 세정연구팀장

공동연구원

김재경 세정연구팀 특수전문직4급

이나현 세정연구팀 특수전문직4급

목 차

I. 서 론	1
II. 빅데이터 활용 현황	3
1. 빅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3
가. 빅데이터의 개념	3
나. 빅데이터 현황	5
2.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의 연혁 및 업무 범위	7
가. 빅데이터 센터 연혁 및 조직	7
나. 빅데이터 센터 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	10
3. 정부부처와 민간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12
가. 정부부처	12
나. 민간기업	16
4. 해외 주요국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19
가. 미국	19
나. 영국	26
다. 프랑스	29
라. 호주	31
III. 빅데이터 수집·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37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37
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37
나. 국제적 논의의 발전	56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판례	62
가.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 근거	62

나. 개인정보 해당 여부	63
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법성 판단	67
3. 개인정보의 정의 및 관련 쟁점	69
가. 개인정보의 정의	69
나. 관련 쟁점	73
IV. 빅데이터 수집·이용 개별 정보별 분석	77
1. 소셜미디어 가입 시 제공 또는 생성된 정보	78
가. 대상 정보	78
나. 개인정보 해당 및 수집·이용의 위법성 여부	79
2. 사용자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81
가. 대상 정보	81
나. 개인정보 해당 여부	83
다. 수집·이용의 위법성 여부	85
3. 이용내역 정보	87
가. 사용자의 소셜미디어 사용 시 자동 수집된 위치정보	87
나. 인터넷 접속 정보 파일(접속 기기 정보)	89
다. 지도(구글 맵스, 네이버 지도 등)	90
라. 카드 사용 내역	90
4. 사업장·법인에 대한 정보	93
5. 기타-개인정보 유상 구매	94
V. 시사점	96
1. 과세목적 특수성을 고려한 빅데이터 수집·이용 방안	96
2.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평가 위원회 및 절차 마련	101
3. 국세청 내부 데이터 취급 부서 간 통합	104
4. 빅데이터 수집·이용의 목적 확대 및 적극적 활용	106
참고문헌	108

표 목차

〈표 II-1〉 빅데이터 국내시장 규모	6
〈표 II-2〉 빅데이터 국내시장의 공공·민간 비중	6
〈표 II-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업무	15
〈표 III-1〉 정보 종류에 따른 활용 가능 범위	44
〈표 III-2〉 개인정보 보호 관련 행정규칙	52
〈표 III-3〉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	54
〈표 III-4〉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종류	54
〈표 III-5〉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발전	57
〈표 III-6〉 EU 95/46/EC 지침과 GDPR의 차이점	61
〈표 III-7〉 개인정보 보호 대상으로 판시한 판례	63
〈표 III-8〉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분류 변화	70
〈표 III-9〉 개인정보 유형에 따른 예시	72
〈표 III-10〉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75
〈표 IV-1〉 개별 정보별 수집·이용의 적법 여부	77
〈표 IV-2〉 소셜미디어를 통한 위치정보 수집의 적법 여부 판단	89
〈표 IV-3〉 「과세자료법」에 따라 수집되는 카드 정보	91
〈표 IV-4〉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과세자료 활용의 적법 여부 판단	92

그림 목차

[그림 II-1]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정보들	4
[그림 II-2] 빅데이터의 속성	4
[그림 II-3] 미국 국세청 RAAS 조직 구성	20
[그림 V-1] 내부 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평가 단계 제안	102

I. 서론

- 오늘날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이를 분석하여 행정에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국세청 또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점차 다양한 조세 행정에 활용하고 있음
 - 빅데이터 분석은 디지털 형식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국세청이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분석을 하는 것으로, 데이터 분석은 개인과 기업 납세자들의 특정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됨¹⁾
 - 납세자의 생애 주기를 추적하여 상황 변화에 따른 세무상 지위 변화 또는 다른 정부 서비스에 활용됨
 - 빅데이터 분석이 조세 행정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는 사례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납세 순응 제고, 세무 지원 서비스 강화, 조세 체납액 관리, 정책 효과성 평가로 분류할 수 있음²⁾
 - 세무조사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납세자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함
 - 제3자 정보와 비교하여 소득신고의 오류 유무 파악, 활용되는 제3자 정보에 따라 공제액 과대 신청·소득 과소신고 등에 대한 검증 가능 항목이 존재함

- 국세청이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던 기존 방식 외에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이용하는 데에 있어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보호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
 - 국세청이 향후 소셜미디어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 자료를 적극적으로

1) OECD, *Technologies for Better Tax Administration: A Practical Guide for Revenue Bodies*, 2016, p. 40.

2) 전병목·김빛마로·안종석·정재현, 『4차 산업혁명과 조세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p. 165.

수집·이용할 필요성이 크며, 빅데이터의 개념 본질상 활용 자료의 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빅데이터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면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소송 비용 등 국세청이 추후 부담하는 위험성이 클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수집·이용 대상 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검토 및 분석을 하고자 함
 - 현재 빅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 수집 형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앞으로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될 대상 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법적 분석을 선행하여 국세청의 적법절차 원칙 준수가 가능하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검토 및 판례 등 소수의 사례가 있으나, 상세한 개별 정보 유형의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 정보별 법적 분석을 거친 후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국세청의 빅데이터 활용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빅데이터 수집·이용에 있어 국세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내부 위원회 또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측면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과세목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빅데이터를 수집·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 평가 위원회 및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함
 - 장기적으로는 국세청 내의 데이터 관련 조직 통합 및 빅데이터 수집·이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국세청 내부 데이터 취급 부서 간 통합안을 제안함
 - 빅데이터 수집·이용의 목적 및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함

II. 빅데이터 활용 현황

1. 빅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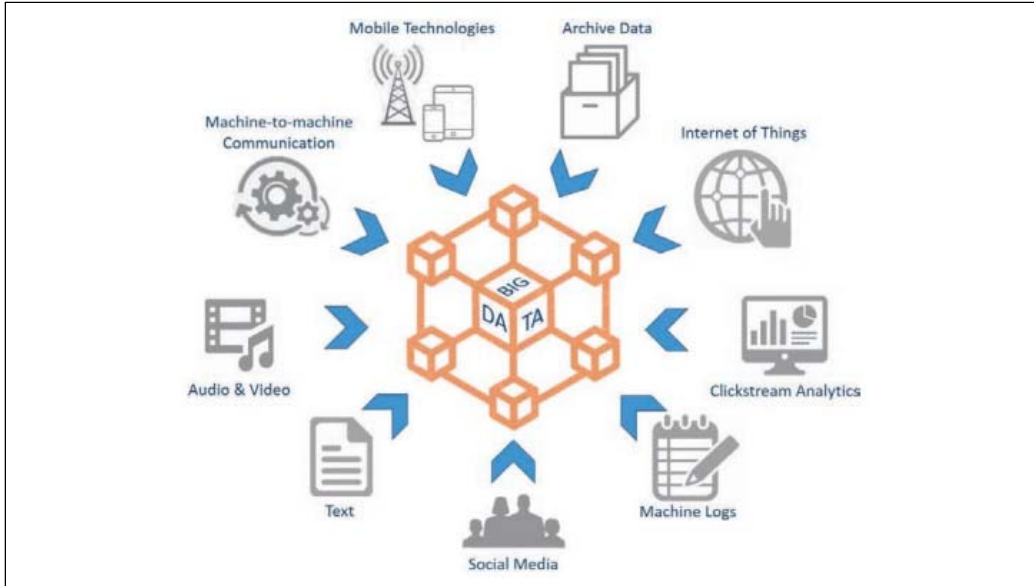
가. 빅데이터의 개념

- 빅데이터는 기존의 방법으로 처리가 어려운 대용량 또는 다양한 유형의 빠르게 생성되는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함³⁾
- 빅데이터는 아날로그 환경에서 생성되는 기존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Variety), 매우 빠른 진행 속도로 처리하며(Velocity), 규모가 거대한(Volume) 것을 그 특성으로 가진다고 요약할 수 있음⁴⁾
 - 데이터 형태의 다양성이란, 빅데이터 환경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SNS 및 가상환경 등 계속해서 개발되는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이미지, 동영상 등과 같이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하거나 특성을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모하며 생성되는 특성이 있음을 말함
 - 데이터 처리의 빠른 속도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에 맞추어 그 분석에 따른 처리 역시 실시간으로 이루어짐을 말함
 - 데이터 규모의 거대함이란, 계속해서 플랫폼이 개발되고 실시간으로 창출되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여 수집 및 분석하여야 할 데이터의 규모가 매우 거대한 것을 말함

3) 행정자치부·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빅데이터 업무적용 가이드』, 2017, pp. 4~5.

4) 김정숙, 「빅데이터활용과 관련기술 고찰」,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0권 제1호, 2012, p.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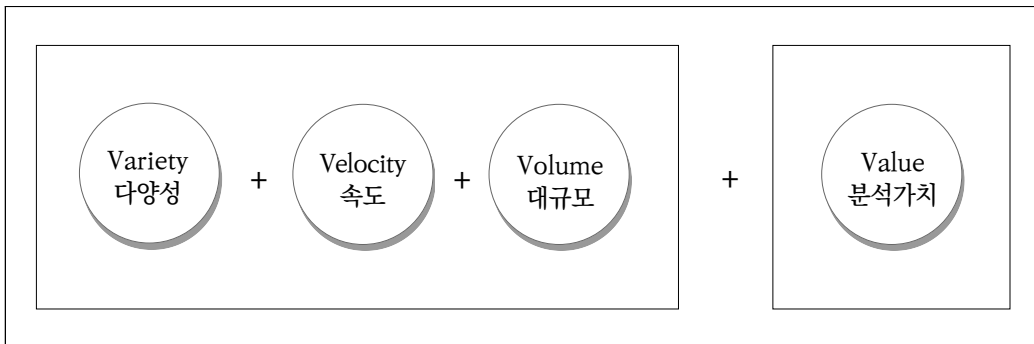
[그림 II-1]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정보들



자료: OECD(2016), p. 49.

- 근래에는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도구로 분석함으로써 원하는 가치를 얻는 것을 포함하여 빅데이터를 정의하고 있음

[그림 II-2] 빅데이터의 속성



자료: 행정자치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7), p. 5.

- 빅데이터 분석은 시간, 공간 그 외 조건들의 변화에 따른 데이터의 분포와 데이터 간 상호 관계를 여러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을 말함⁵⁾
 -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데이터의 유의미한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분석하기 위함임
 -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파악과 해당 사건들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것인지를 추측할 수 있음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난, 범죄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공공분야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민원, 재난, 범죄 등의 발생 패턴 파악이 가능함
 - 이를 통해 국민의 상황과 수준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선별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조세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누락된 세금신고와 탈세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 탈세 방지를 위한 조기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세금 신고의 정확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빅데이터 현황

- 2020년 기준 국내 빅데이터 사업 시장 규모는 1조 2,133억원으로 2019년과 대비하여 35.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⁶⁾
 -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은 35.8%로, 빅데이터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이 확인됨

5) 행정자치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7), pp. 4~5.

6)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2021, p. 129.

〈표 II-1〉 빅데이터 국내시장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E)
빅데이터 시장 규모	2,623	3,440	4,547	5,843	8,961	12,133
전년 대비 증감률	30.3	31.1	32.2	28.5	53.4	35.4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2021, p. 129.

- 2019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데이터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2019년에는 공공과 민간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크게 상승하였음
 -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투자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민간 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기대됨

〈표 II-2〉 빅데이터 국내시장의 공공·민간 비중

(단위: 억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공공	2,014	34.5	4,018	44.8	5,244	43.2
민간	3,829	65.5	4,942	55.2	6,899	56.8
합계	5,843	100.0	8,961	100.0	12,133	100.0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1), p. 131.

- 정부는 2020년 1월 데이터3법 개정을 계기로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⁷⁾
 -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개방·유통·확대를 추진할 것을 계획함
 - 공공·민간 분야별(교통, 금융, 에너지 등) 데이터 구축·개방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를 마련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3법 개정을 계기로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 보도자료, 2020. 1. 9.,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415>, 검색일자: 2021. 9. 30.

- 정부 지원 연구개발 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공유·활용을 위해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 수요 높은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개방하여 공공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

2.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의 연혁 및 업무 범위

가. 빅데이터 센터 연혁 및 조직

-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는 2019년 출범하여 본청 정보화관리관 산하에 소속되어 있음
 - 국세청은 2017년 10월 빅데이터 T/F, 2018년 1월 빅데이터 추진팀을 구성하여 빅데이터와 관련한 업무를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7월 4일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함⁸⁾
 - 빅데이터 센터는 빅데이터 총괄팀, 개인분석팀, 법인분석팀, 자산분석팀, 공통세정분석팀, 심층분석팀, 기술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⁹⁾ 현재 5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됨
- 빅데이터 센터는 빅데이터 분석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기존 노하우의 시스템 반영, 납세 서비스와 업무 효율 개선, 신종 과세자료 포착 등임
 -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르면 빅데이터 센터는 빅데이터시스템을 사용하여 빅데이터 과제의 발굴, 분석 및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함¹⁰⁾

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지난 1년간 국세행정 혁신을 위한 플랫폼 마련」,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124>, 검색일자: 2021. 9. 30.

9) 국세청, 「조직과 기능」, <https://www.nts.go.kr/nts/nts/deptEmpList.do?upperOrgnztCode=022&orgnztCode=022F&mi=6740>, 검색일자: 2022. 3. 16.

10)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7조의2

- 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운영 업무
 -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 빅데이터 과제의 발굴, 분석 및 개발 업무
 - 빅데이터 사업 관리 업무
- 2020년 구체적인 업무 현황 또는 성과는 기존 노하우의 시스템 반영, 납세서비스와 업무 효율 개선, 효과적 세원관리를 통한 공정과세 실현, 신중 과세자료 포착임¹¹⁾
- 축적된 기존 업무 노하우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업무품질이 담당자 개인 역량에 좌우되지 않도록 표준화함
- 사업자 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는 세무서 직원이 납세자의 유형 및 사업 이력 등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했으나, 빅데이터 시스템에서는 사업자 등록 처리 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자 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담당자에게 사전 제공함
 - 2019년 11월~2020년 5월, 현장 확인 비율은 9.5%, 이전 연도 같은 기간의 현장 확인 비율은 15.8%로, 2020년 현장 확인 건수가 약 40%(3만건) 감소함
 - 현장 확인 업무 감축으로 인하여 2020년 7월부터 사업자 등록 발급 기한도 3일에서 2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됨¹²⁾
-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챗봇을 개발하였으며,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료를 직원들에게 제공함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사업 관련 비용을 판별하여 납세자에게 신고도움 자료로 제공하여, 2020년에 소규모사업자(기준경비율 신고자) 35만명 중 23만명이 제공된 내용(미리채움 서비스)을 그대로 신고함

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지난 1년간 국세행정 혁신을 위한 플랫폼 마련」,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124>, 검색일자: 2021. 9. 30.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 빅데이터 기술로 챗봇을 개발하여 국세청 홈택스 실시간 채팅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관련 챗봇 서비스로 납세자들이 일과시간 외에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함
 - 2020년 5월, 30만건 이상의 상담서비스를 시행하였고 응답률은 86% 이상임
-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¹³⁾ 납세자별 적격요건 자동 분석을 통해 연장 검토를 신속하게 처리함
 - 납세자의 신용카드 내역·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3개월간 매출·매입 등을 예측하고, 자금 경색 여부 추정 정보를 담당자에게 제공함
 - 납부 이력 등 체납자별 특성을 분석하여 납부안내 우선순위를 직원에게 제공함
 -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해당 예측정보가 납부기한 연장 업무에 활용되도록 함
- 과학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원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에 대응하여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함
 -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근무지 자료에 기반한 빅데이터 군집분석을 활용함
 - 연간 3만건에 달하는 차명계좌 제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국세청이 보유한 계좌정보·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친인척 자료 등을 활용하여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자동 분석함
 - 2020년 8월부터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을 차명계좌 분석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함
 - 단어 유사도와 특수 관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외환 수취자료를 분석하여 수출대금 차명수취, 국외투자수익 우회증여 등 역외탈세 행위에도 대응하는 데이터 분석기법을 개발함

13)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 제1항 제6호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절차로는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을 운영함¹⁴⁾
 - 구매된 데이터의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평가단을 운영함
 - 내부위원 2명, 외부 전문가(법률 및 기술) 10명으로 평가단 풀(pool)을 구성함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식별 조치 기법 등을 검토함¹⁵⁾
 - 평가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기초자료와 인터뷰 등을 통하여 평가대상 데이터에 개인 식별 요소 포함 여부, 데이터 이용 목적, 적용된 비식별 조치 기법 등을 검토함
 - 재식별 시도 가능성을 분석하고 계량 분석 또는 평가 기준값을 결정함

나. 빅데이터 센터 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

-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규정 및 여타 세목별 세법 및 일반 법률에 근거하여 자료를 수집·이용하고 있고, 빅데이터 센터는 수집의 목적 범위 내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은 일반적인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요청을 통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거나,¹⁶⁾ 세법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 의무자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¹⁷⁾
 - 국세청은 개별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 가능하나, 다만 각 법률에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빅데이터 센터가 이를 활용하는 것은 목적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
 - 국세청이 수집할 수 있는 일반 법률상 근거 규정으로서 「주민등록법», 「부동산 등기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이

14) 『한국 세정신문』,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개인정보 보호 어떻게 이뤄지나?」, 2020. 9. 21.,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46383>, 검색일자: 2021. 3. 31.

15)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2016, pp. 42~48.

16) 「국세기본법」 제84조

17) 「국세기본법」 제85조

경우에도 수집의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함

- 빅데이터 센터는 신용카드 자료의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미 수집된 자료를 활용함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과세자료 제출의 범위 규정에 기초하여 신용카드 자료 또한 수집 가능함
 -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국세의 부과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에 한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¹⁸⁾
 - 세무관서의 장은 그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¹⁹⁾
 - 신용카드 조기경보 자료, 연간 사용 내역, 이용대금 결제명세 등의 카드사별 또는 가맹점별 정보(개인 납세자별 사용 건별 정보는 해당 없음)를 수집함²⁰⁾
 - 국세청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으나²¹⁾ 이에 근거한 신용카드 자료는 연말 소득 공제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빅데이터 센터는 이와 같이 수집한 자료를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활용함
 - 세무공무원은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나,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²²⁾
 - 「국세기본법」은 예외적으로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함²³⁾

1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1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2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5 (가)목, (나)목 및 별표 100

21)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2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예외 규정 중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임²⁴⁾
- 국세청장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²⁵⁾

3. 정부부처와 민간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 빅데이터 활용은 데이터 생태계의 가치사슬(데이터 수집·저장·유통·활용)을 기반으로 공급-증개-수요 시장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함²⁶⁾
- 빅데이터 활용은 ① 데이터 생산 → ② 데이터 정제·가공을 통한 데이터·정보 유통 → ③ 기업, 정부, 공공기관 활용 → ④ 소비자, 시민 등이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흐름으로 진행됨
- 경제적 가치 창출이란 신제품·서비스 제공, 생산성·효율성 향상, 제품·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의미함

가. 정부부처

1) 특허청

- 특허청은 특허청장 산하에 ‘특허 빅데이터 담당관’을 설치함
- 특허 빅데이터 담당관은 특허 정보와 관련된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데이터 업무를 총괄하고, 특허 빅데이터 활용 계획 수립 및 특허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²⁷⁾

2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2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4호

2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이터 경제」,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563#L5>, 검색일자: 2022. 1. 28.

- 특허청장 직속 부서로 특허 빅데이터 담당관, 특허 사업화 담당관, 아이디어 거래 담당관이 있음
- 특허청은 2021년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통한 R&D 효율성 강화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임²⁸⁾
 - 디지털, 탄소중립 등 핵심정책·산업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특허 관점의 R&D 전략을 수립하며, 2021년 7개에서 2024년까지 누적 총 35개 분야로 빅데이터 분석 분야를 늘릴 예정임
 - R&D 부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간 ‘특허 빅데이터 포럼’ 신설을 추진하고, 산업 활동 전반에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확산을 추진함
- 특허청은 2020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내에 ‘특허 빅데이터 센터(KPB Center)’를 설립하였음²⁹⁾
 - 2022년까지 인공지능(AI), 미래형자동차 등 신산업 관련 산업별·기술별 핵심정보를 생산해 제공하고,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혁신전략을 제공할 예정임³⁰⁾
 - 감염성 질환·기후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특허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을 도출함
 - 기후변화 대응기술 등 사회 현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제시함
 - ‘특허 빅데이터 센터’는 R&D 과제를 발굴하고 매년 17개의 청사진산업분야, 산업혁신전략분야의 보고서를 발간함³¹⁾

27) 특허청, 「특허빅데이터담당관 메인페이지」, https://www.kipo.go.kr/kpo/BoardApp/USilSvcApp?c=1001&silguk_cd=125&dept_cd=125000&movePage=bigdata&catmenu=m10_27_01, 검색일자: 2021. 10. 18.

28) 『파이낸셜 뉴스』, 「특허청,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특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021. 4. 25., <https://www.fnnews.com/news/202104251404324581>, 검색일자: 2021. 10. 18.

29) 『특허뉴스』, 「특허청,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판」, 2020. 6. 19., <http://m.e-patentnews.com/6734>, 검색일자: 2021. 10. 18.

30) 특허청, 「국가특허빅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산업 혁신 주도」, 보도자료, 2021. 5. 10., 검색일자: 2021. 10. 18.

31) 특허빅데이터센터, 「빅데이터센터 소개」, <https://pbcenter.re.kr/home/p/intro>, 검색일자: 2021. 10. 18.

- 주요 산업분야 특히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통해 주요 산업별 연도별, 국적별 특허출원 건수, 경쟁국 및 기업의 특허출원 동향 등 양적 지표를 분석하여 메가트렌드를 제공함
- 산업혁신전략 특허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통해 국가 산업 정책적으로 중요한 산업 및 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국가별 산업정책 및 규제 등 정책적 관점의 동향분석에서부터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핵심특허를 분석함
- 사회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 분석을 제공하여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술적 해결방안을 도출한 보고서를 제공함
- 국내외 이슈 기술에 대한 특허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분야의 특허 동향, 외국에서 최근 발표된 특허분석 결과 등 이슈 기술에 대한 특허분석 정보보고서를 제공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은 빅데이터전략부, 빅데이터운영부, 데이터결합부로 구성되어 있음³²⁾
 - 빅데이터전략부는 빅데이터 전략 수립 및 신규 사업 발굴 및 연구 등 빅데이터 업무의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임
 - 빅데이터운영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및 빅데이터 표준화 활용, 의료행위 분류 체계 등 빅데이터 자체를 활용하는 업무를 담당함
 - 데이터결합부는 가명정보 결합·활용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결합 적정성 평가 및 가명정보의 반출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함

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직도」,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40011000000&cmsurl=/cms/08/01/03/1337911_27179.html, 검색일자: 2021. 10. 15.

〈표 II-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업무

부서	업무 내용
빅데이터전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빅데이터 신규 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기관 간 정보 교류 등 빅데이터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 공공데이터 목록 발굴 및 개방에 관한 사항 - 빅데이터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빅데이터 시각화 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안전 관련 법령·규정 등에 대한 부서 내 안전 예방·관리 활동 수행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의 자료요청·사실조회 등에 관한 회신 및 부서 내 처리부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부서 내 업무혁신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빅데이터운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등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약품사용정보 개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표본·코호트 등 데이터셋 개발,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빅데이터 표준화(CDM)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의료행위 분류체계 및 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데이터결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명정보 결합·활용 가이드라인 운영에 관한 사항 - 결합 적정성 평가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에 관한 사항 - 반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가명처리 및 결합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직도」,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40011000000&cmsurl=/cms/08/01/03/1337911_27179.html, 검색일자: 2021. 10. 1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함³³⁾

33)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시스템 소개」, <https://opendata.hira.or.kr/op/opb/selectHelhMedDataInfoView.do>, 검색일자: 2021. 10. 15.

- 시스템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데이터셋, 오픈 API), 의료빅데이터분석(빅데이터센터), 의료통계분석(질병, 의약품,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개방데이터 DB를 통하여 공공데이터 및 오픈 API, 의료통계정보 시각화 조회, 빅데이터분석과제 신청 및 이용,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통계분석 DB를 통하여 SAS분석, 시각화분석, R분석 서비스를 제공함
-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은 인터넷,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격분석도 가능하며,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음

나. 민간기업

1) 증권사 마이데이터 서비스

-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는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사별로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함
- 2020년 8월 개인정보를 사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3법의 시행과 함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여,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민간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³⁴⁾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동의하에 은행·카드사·통신사·보험 등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이러한 마이데이터 사업의 도입에 관하여 신용카드 영역에 한정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율 영역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 영역의 일반적 제도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있음³⁵⁾
- 하나로 모은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각 소비자에게 맞는 자산관리계획을 추천할 수 있음

3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2

35) 김현경,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 통권 72호, 2020, p. 274.

- 마이데이터는 개방된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생성되는 빅데이터로 융합데이터라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현함³⁶⁾
- 개인별의 금융, 의료 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한 뒤 융합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냄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의해 수집된 개인의 정보를 통합된 형태로 구축하여 개인에게 제시함으로써 개인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통제권 및 관리권을 가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공공기관에 수집된 개인의 정보와 민간기업에 수집된 개인의 정보를 하나의 빅데이터로 융합하기 위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와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 인정 범위에 관한 고민이 필요함

2) 구글

가) 구글 트렌드

- 구글 트렌드는 구글 사용자들의 구글 검색 키워드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로 구축한 뒤 사용자들의 검색동향을 지수화하고, 이를 도표로 만들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임³⁷⁾
- 구글 트렌드 이용자가 지정한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여 고객 서비스와 마케팅 등의 영역에 활용할 수 있음
 - 관심 주제를 지정하여 검색하면 해당 주제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도 변화를 시간 흐름에 따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나타냄
 - 수집한 빅데이터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지역별 관심도 차이를 보여줌
 - 지정한 주제를 검색한 사람들이 연관하여 검색하는 주제의 순위를 보여줌

36) 박주석,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마이데이터의 비교연구」, 『한국빅데이터학회지』, 제3권 제1호, 2018, pp. 41~46.

37) 이병욱·김준호·우종필, 「구글 트렌드를 이용한 기업의 매출액 및 주가 예측」,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10호, 2018, pp. 491~501.

- 구글은 수집한 빅데이터를 통해 전 세계 독감 유행 시기를 예측하기 위한 ‘구글 독감 트렌드’ 모형을 제시한 바 있음
 - 구글 자체 검색엔진에서 독감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발열’, ‘기침’ 등의 정보를 검색한 빈도 및 구글 지메일에 포함된 내용 중 독감과 관련한 단어가 등장한 시기를 국가별로 분석한 뒤 통계청 등에서 수집한 정형화된 공공데이터를 반영하여 독감 유행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설계함
 - 이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독감 예측보다 선제적으로 올해의 독감 유행 시기를 예상하고자 함
 - 2010년 워싱턴 대학에서 구글 독감 트렌드가 질병관리본부 모니터링 시스템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연구를 발표³⁸⁾하면서 2015년 8월 이후 구글은 독감 트렌드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임

나) 구글 공공데이터 익스플로러

- 2010년 3월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Google public data explorer”라는 웹 사이트를 만들었음³⁹⁾
 - OECD, 세계은행, 미국정부, 유럽 통계청 및 학술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여 공개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도 데이터셋을 업로드할 수 있음
 - 여러 분야의 전 세계 공공데이터를 제공함
 - 데이터를 그래프 등 시각화된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데이터의 변화 추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각 국가에서 수집된 공공데이터를 토대로 특정 주제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제공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를 제공함

38) Search Engine Land, “Google Flu Trends Is Under The Weather, Study Says,” May 18, 2010., https://searchengineland.com/google-flu-trends-under-the-weather-42282?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pingfm&utm_campaign=Feed%253A+Referencement-mix+referencementMIX, 검색일자: 2021. 10. 15.

39) 이만재, 「빅 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활용」, 『Internet&Information Security』, 제2권 제2호, 2011, p. 48.

4. 해외 주요국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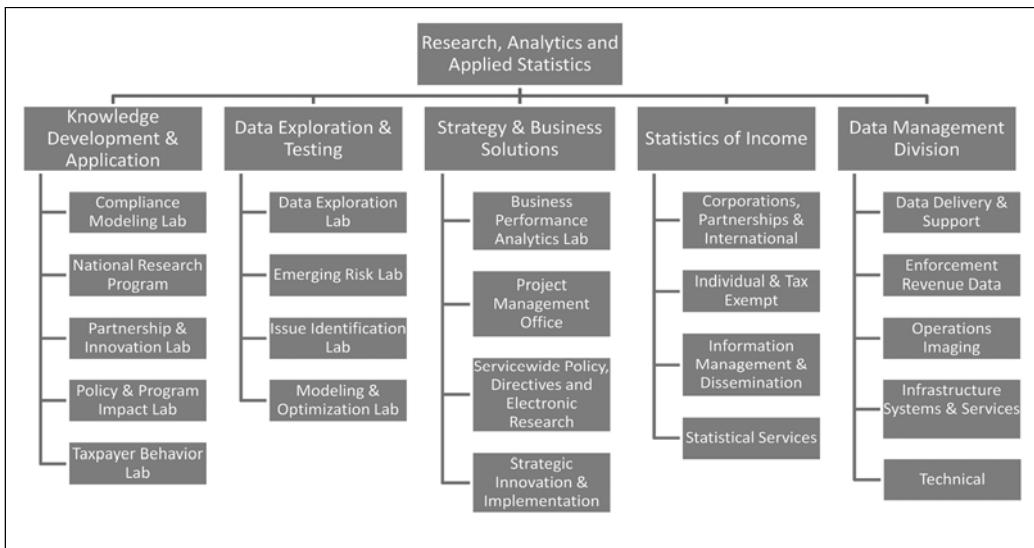
가. 미국

- 미국 국세청(IRS) 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RAAS(Research, Applied Analytics and Statistics Division)가 있음
 - IRS는 2011년에 탈세와 조세사기에 대응하고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는 조직인 OCA(Office of Compliance Analytics)를 창설하였고 2016년 조사·통계 부서인 RAS(Research, Analysis and Statistics Division)와 통합하여 현재의 RAAS(Research, Applied Analytics and Statistics Division)로 개편되었음⁴⁰⁾
 - OCA와 RAS의 통합은 IRS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통계 분석 및 기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데이터 중심의 연구를 선도하기 위한 목적임
 - RAAS는 IRS 운영부서와 협력하여 데이터 고급분석 응용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징세비용을 줄이고 탈세를 적발하고 있음
 - 계량 경제학 모델링, 제안된 입법사항, 예측 모델, 시행 중인 규정 분석 등을 기반으로 전략적 조세징수를 위한 연구를 수행함
 - 연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새로운 전략 개발 및 유지·관리를 통해 IRS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을 지지함
 - 시행 중인 세금 시스템 및 IRS 운영에 대한 품질 관리를 위해 적시에 상관성 높은 통계를 제공함
- IRS의 연구응용분석통계국(Research, Applied Analytics and Statistics Division, RAAS)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연구 조직으로 5개의 하위부서로 구성되어 있음⁴¹⁾

40) 정규연, 「사회변화에 따른 세무행정의 대응: 빅데이터와 AI 활용에 대한 국세청과 미국 IRS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세무학연구』, 제38권 제1호, 2021, pp. 41~67.

- RAAS는 수석 연구 및 분석책임자가 5개의 하위 부서에 대한 감독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에 관하여 운영 지원 부국장에게 보고함
 - 하위 부서는 ① 데이터 탐색 및 테스트부 ② 데이터 관리부 ③ 지식개발 및 응용부 ④ 소득통계부 ⑤ 전략 및 비즈니스솔루션부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II-3] 미국 국세청 RAAS 조직 구성



자료: 미국 국세청(IRS), "Research, Applied Analytics and Statistics Organization," https://www.irs.gov/irm/part1/irm_01-001-018, 검색일자: 2021. 11. 15.

- RAAS의 데이터 탐색 및 테스트부(DET)는 데이터 탐색 연구실, 이머징 리스크 연구실, 문제 식별 연구실, 모델링 및 최적화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음
 - 데이터 탐색 연구실은 사기행위를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 소스를 조사함
 - 연구실은 사기의 새로운 방식을 탐지하고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패턴과 추세를 식별함

41) IRS, "Part 1. Organization, Finance, and Management > Chapter 1. Organization and Staffing > Section 18. Research, Applied Analytics and Statistics Division > 1.1.18 Research, Applied Analytics and Statistics Division," https://www.irs.gov/irm/part1/irm_01-001-018, 검색일자: 2021. 11. 15.

- 이를 통해 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IRS의 징세비용을 절감함
 - 이머징 리스크 연구실은 서비스 전반에 걸쳐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위험을 파악함
 - 대규모로 조정된 데이터 간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분석하여 정보를 추출하고 납세환경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함
 - 이를 통해 납세환경에서 발생될 새로운 위험을 식별함
 - 문제 식별 연구실은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 여부 식별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함
 - 연구소는 세금 데이터와 납세자 정보를 분석하여 납세 규정 준수 문제를 식별하여 수량화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함
 - 모델링 및 최적화 연구실은 예측 모델과 자원 및 워크로드의 최적화를 통해 IRS 서비스의 효율을 높임
 - IRS의 인력활용과 같은 자원 최적화 모델과 더불어 세금준수 문제에 대한 탐지, 탈세 예방 및 처리 모델에 대한 최적화가 이루어짐
- RAAS의 데이터 관리부(DMD)는 데이터지원, 집행 수익 데이터 연구실, 인프라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영상 연구실, 기술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음
- 데이터지원은 CDW(Compliance Data Warehouse)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제품의 관리 및 조정을 감독함
 - 집행 수익 데이터 연구실은 IRS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ERIS(집행수익정보 시스템)에 데이터로 생성함
 - 인프라 시스템 및 서비스는 규정을 준수하여 데이터 저장소, RAAS 부서 업무를 위한 서버 및 네트워크의 설치를 지원함
 - 운영 영상 연구실은 RAAS 소득 통계 및 데이터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서버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스캐닝과 IRS 전자 파일 분석 작업을 감독함
 - 기술연구실은 RAAS 내 다른 IT부서와 협력하여 RAAS가 연방 세금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배포하는 데 필요한 서버 및 네트워크를 지원함

- RAAS의 지식개발 및 응용부(KDA)는 컴플라이언스 모델링 연구실, 국가 연구 프로그램, 파트너십 및 혁신 연구실, 정책 및 프로그램 영향 연구실, 납세자 행동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음
 - 컴플라이언스 모델링 연구실은 세금에 대한 자발적 신고율 및 납부 불이행의 이유와 정도를 추정함
 - 국가 연구 프로그램은 납세 인구에 대한 세부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IRS, 재무부 및 행정부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알리고 의회의 질의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함
 - 파트너십 및 혁신 연구실은 학계 및 주요 외부 이해 관계자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IRS 연구와 관련한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통찰력을 제공함
 - 정책 및 프로그램 영향 연구실은 주요 입법 시행 프로그램 및 세무 행정 정책 변경 계획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 납세자 행동 연구실은 납세자가 세금납부를 위해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추정하고 납세자가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노력을 절감함으로써 세금 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함

- RAAS의 소득통계부(SOI)는 기업·파트너십·국제, 개인·면세, 정보관리·보급, 통계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
 - 기업·파트너십·국제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법인 소득세 신고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를 생성함
 - 개인·면세는 개인, 면세조직, 면세 채권, 증여 및 유산에 대한 세금을 보고하기 위해 제출된 소득세 양식 및 관련 데이터에서 포괄적인 통계를 생성함
 - 정보 관리 및 보급은 인쇄 및 보급을 위한 간행물을 준비하고 대중에 대한 통계정보 제공 서비스를 관리함
 - 통계서비스는 IRS 내 다양한 조직에 통계서비스를 제공함

- RAAS의 비즈니스 성과 분석 연구실(SBS)은 프로젝트 관리 사무실, 서비스 정책·지침·전자 리소스, 전략적 혁신 및 구현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젝트 관리 사무실은 고위직 리더십 회의, 실무 커뮤니티와 같은 포럼을 통해 IRS 연구 커뮤니티 전반에 연구정보를 공유함
 - 서비스 정책·지침·전자 리소스는 IRS 직원의 집행업무를 위한 국세청 매뉴얼 관리 및 전자 연구 서비스 등을 설계하고 제공함
 - 전략적 혁신 및 구현 연구실은 IRS 이해관계자들과 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IRS 담당자들이 고급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함

- IRS는 과세자료의 수집을 위해 납세자로부터 원천징수 자료 등을 제출받는 방식을 넘어 다각화된 방식을 통해 능동적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42), 43)}
 - 휴대전화 대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Stingray 기술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음
 - 미국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에 따르면 IRS는 2009년 및 2012년에 휴대전화 추적 기술을 구매한 이력이 있다고 함
 -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검토하기 위해 자동 자료수집 프로그램인 spiders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음
 - 세금을 징수하기 전 잠재적 탈세자를 분류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중 Facebook, MySpace 및 YouTube를 활용한다고 알려져 있음
 - Google maps를 통해 필요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IRS는 주택소유자협회와의 조세 소송에서 법원에 Google maps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주택 소유자협회의 501(c)(4) 면세지위를 취소한 바 있음

42) 정규연(2021), pp. 41~67.

43) Kimberly A. Houser and Debra Sanders, "The Use of Big Data Analytics by the IRS: Efficient Solutions or the End of Privacy as We Know?," *Vanderbilt Journal of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19(2), 2017, pp. 817~872.

- 그 밖에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이 제공한 자료, 국가별 보고서 교환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제공한 자료, 조세피난처 등을 통해 유출된 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IRS는 개인 식별정보 수집 시 해당 정보 수집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 평가(PIA)’를 수행하고 있음⁴⁴⁾
 - PIA는 납세자들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임
 - 납세자들은 IRS가 수집하는 정보에 대하여 알 수 있음
 - 해당 시스템을 통해 개인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처리함
 - 해당 시스템을 통해 IRS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함
 - 납세자들은 IRS가 의도한 목적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IRS는 수집한 정보를 보유하는 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에 노력하고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만 보유함
- IRS는 납세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해 의사결정도구로 ‘개인정보 보호 및 시민 자유 영향 평가(PCLIA)’를 사용하고 있음
 - PCLIA는 납세자들이 IRS의 정보 수집 이유, 사용, 공유, 접근, 보안 및 저장 방법 등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공정 정보 관행 원칙’을 사용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함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해당 법률, 규제 및 정책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함
 - 위험과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 및 대체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함

44) 미국 국세청, “IRS Privacy Policy,” <https://www.irs.gov/privacy-disclosure/irs-privacy-policy>, 검색일자: 2022. 4. 1.

- 개인정보 및 헌법상의 권리 보호가 지켜진다는 점에 관하여 대중에게 확신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함

□ 공정한 정보 관행을 수립하여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개인정보의 침해를 막고자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기관의 기록 수집, 유지, 접근, 사용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정보 수집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에 대한 정보 사용에 따른 통지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록시스템의 수정 또는 생성에 대한 통지를 연방 관보에 게시할 것으로 정하고 있음

- 기록시스템은 개인의 이름이나 개인 식별 번호, 기호 또는 개인에게 할당된 기타 식별정보를 기초로 정보를 검색하는 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그룹을 말함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에게 수집·관리되고 있는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자신의 기록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IRS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로 인하여 개인정보침해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하여 IRS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IRS가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한 경우 납세자는 국세청 본부에 있는 Office of Privacy, Governmental Liaison and Disclosure에 서면으로 문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 고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 무단 공개에 따라 발생한 문제

- IRS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절차 위반으로 인한 문제

○ Office of Privacy, Governmental Liaison and Disclosure는 IRS가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수집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관해서만 해결함

- 답변까지 최대 4주의 시간이 소요됨

나. 영국

- 영국 국세청(HMRC)은 데이터 수집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왔으며 ‘커넥트 프로젝트(connect project)’를 진행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임대 및 양도 소득 등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빅데이터를 활용함
 - 커넥트 프로젝트는 개별 납세자의 정보 수집·저장·분석의 세 가지 기능을 하나의 체계하에 운영하는 것으로, 영국 국세청은 약 30개 이상의 정보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대규모 자료를 일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음⁴⁵⁾
 - 제3자 자료의 예로는 급여, 연금, 신용카드 및 기타 신용거래 내역을 포함하며, 금융기관 자료, 이베이(eBay), 에어비앤비(Airbnb) 등 온라인 거래자료뿐만 아니라 특수한 경우 개인의 SNS 활동 내역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됨
 -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와의 비교 검증을 통해 과소신고 적발을 고려할 수 있음⁴⁶⁾
 - 예를 들어, 영국 등기소의 자료를 수집하여 인지세,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의 신고액을 검증하거나 운전면허국의 차량등록정보 등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음

- 영국 국세청 산하의 정보분석국(Knowledge, Analysis and Intelligence, KAI)은 조세 전문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로 분석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데이터의 사용과 분석을 하고자 함⁴⁷⁾
 - 조세 정책 및 행정에 대한 1차 연구를 수행함
 - 조세 정책을 평가하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증적 작업을 수행함

- 영국 국세청은 세무행정 연구센터(Tax Administration Research Centre, TARC)의 조세 연구를 공동 자금으로 지원함

45) 전병목 외(2020), p. 155.

46) 전병목 외(2020), p. 166.

47) TAX JOURNAL, "Briefing: HMRC's analysis and research work," 2015. 6. 5., <https://www.taxjournal.com/articles/briefing-hmrc-s-analysis-and-research-work-02062015>, 검색일자: 2021. 10. 19.

- 세무행정 연구센터는 큰 규모의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집단으로, 약 300여 명의 애널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당수는 경제, 리서치, 통계 등 분석 전문가임
- 세무행정 연구센터는 2013년에 설립되어 2018년에는 세무행정연구를 수행하는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발전하였으며, 국세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⁴⁸⁾
 - 경제 및 사회연구이사회는 2012년 12월 국세청(HMRC) 및 재무부(HMT)와 파트너십을 맺고, 독립적인 세무행정 연구센터를 설립함
 - 2018년에는 엑스터 대학에서 세무행정 연구센터를 담당함
- 또한 영국 정부는 정부가 제작 관리하는 데이터 웹사이트(data.gov.uk)를 구축함⁴⁹⁾
 - 웹사이트는 정부, 기업 및 경제, 범죄 및 정의, 보안, 교육, 환경, 정부지출, 보건, 지도, 사회, 지방도시, 운송, 디지털서비스, 정부 데이터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 영국 국세청은 ‘납세자 개인정보 헌장(Personal Information Charter)’을 제정하여 사용정보 출처, 사용방법, 정보 제공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⁵⁰⁾ 이에 의하면 영국 국세청은 ‘오픈소스(open source)’ 자료, 즉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데이터⁵¹⁾를 관찰·모니터링·기록 및 보관할 수 있음
 -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보를 특정한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함
 - 하나 이상의 법적 기능을 위하여 사용
 - 납세자의 기존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 사기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정보와 비교
 - 납세자의 적격 여부 확인
 - 납세자의 신원 진부 확인

48) TARC, “About Tarc,” <https://tarc.exeter.ac.uk/thecentre/abouttarc/>, 검색일자: 2021. 10. 18.

49) data.gov.uk, “Find Open Data,” <https://data.gov.uk/>, 검색일자: 2021. 10. 18.

50) GOV.UK, “Personal information charter,”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revenue-customs/about/personal-information-charter>, 검색일자: 2021. 10. 13.

51) 오픈소스 자료의 예로는 뉴스 보고서, 인터넷 사이트, 상가건물 및 토지 등기, 개인정보 설정이 적용되지 않은 블로그 및 SNS가 있음

-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특정 기구 등에 제공함
 - 여타 정부부처 및 유사 기관
 - 경찰 및 법 집행기관
 - 유효한 명령을 발령하는 법원
 - 외국의 국세청 또는 관세청

- 영국 「국세청 개인정보 지침(HMRC Privacy Notice)」은 「영국 GDPR」 및 「2018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을 포함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설명함⁵²⁾
 - 영국 국세청이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조세의 범위를 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 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보험세, 석유세, 환경세, 토지세, 인지세, 기후변화부담금, 골재채취세, 매립세, 부가가치세(수입 부가가치세 포함), 관세, 소비세, 무역 통계, 국민보험기여금, 공제, 자녀수당, 최저임금, 학자금대출 상환금 회수, 선물 원조, 면세보육 및 30시간 무상 보육, 코로나바이러스 고용 유지 제도, 개인사업자 소득 지원 제도임
 - 영국 국세청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계약자 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와 일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일반적으로 영국 국세청의 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여 국세청의 지시 및 계약에 따라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는 정책에 따라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특정 목적하에서 영국 국세청의 지시 또는 계약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함

52) HM Revenue & Customs, "Guidance HMRC Privacy Notic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ata-protection-act-dpa-information-hm-revenue-and-customs-hold-about-you/data-protection-act-dpa-information-hm-revenue-and-customs-hold-about-you>, 검색일자: 2021. 10. 13.

- 영국 국세청의 개인정보 보유는 별도로 ‘기록 관리, 보유 및 처분 정책’에 따라야 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기록 관리에 관한 것이지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도 포함함⁵³⁾
 - 「영국 GDPR」 및 「2018 데이터보호법」에 따라 국세청에서 보유하는 개인정보는 합법적인 목적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보관할 수 없음
 - 기본 표준 보존 기간은 6년이며, 법적·보안상의 이유 또는 역사적 가치로 인해 보존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본 보존 기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있음
 - 「영국 GDPR」, 「2018 데이터보호법」, 「HMG Offshoring Policy」를 준수하는 경우에 제3자도 데이터 프로세싱, 저장, 기록 파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다. 프랑스

- 프랑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데이터 수집 기술 및 도구 등을 개발하고, 2016년 법률을 제정하여 데이터와 관련한 내용을 다룸
 - 프랑스 국세청은 2013년부터 데이터 수집 기술과 도구를 개발해 왔음⁵⁴⁾
 - 자동화된 조세 범칙 사건 처리 절차를 위하여 ‘위험 분석을 위한 데이터 평가’를 운영하고, 국세청·데이터베이스·무료로 접근 가능한 저장매체로부터 수집한 조세 관련 데이터에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였음
 - 프랑스는 2016년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률(Loi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을 제정하여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룸⁵⁵⁾

53) GOV.UK, “Policy paper - Records Management and Retention and Disposal Polic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mrc-records-management-and-retention-and-disposal-policy/records-management-and-retention-and-disposal-policy>, 검색일자: 2021. 10. 13.

5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1년 3호, 2021, p. 24.

55) Légifrance, “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https://www.legifrance.gouv.fr/dossierlegislatif/JORFDOLE000031589829/>, 검색일자: 2022. 3. 15.; Légifrance, “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33202746>, 검색일자: 2021. 10. 18.

- 2017년부터 ‘경제 및 통계연구소(INSEE)’⁵⁶⁾의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고, 통계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가 서로 상응하도록 규정함
- 정보 주체에게 ‘행정 통계 보호 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며 연구자들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프랑스 정부는 2021년 법령을 제정하여 국세청에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⁵⁷⁾

- 국세청은 디지털 플랫폼 사용자가 공개한 데이터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⁵⁸⁾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절차를 거치게 됨
 - 비밀번호로 보호되거나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계정을 생성하여서만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뿐만 아니라 직업 활동 수행 또는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한 데이터도 포함함⁵⁹⁾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조세 범칙 사건의 증거를 찾을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의 개인정보 외에도 에어비앤비(Airbnb) 또는 광고 웹사이트(Le Bon Coin)와 같은 플랫폼의 개인정보를 조사할 수 있음⁶⁰⁾
 -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데이터 보호기관인 ‘국립 정보 및 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는 조세 범칙 사건 수사 목표와 공공의 자유 존중 사이의 엄격한 균형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함

□ 법령에 따르면 프랑스 국세청은 식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민감 정보와 일반

56)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57) Légifrance, “Décret n° 2021-148 du 11 février 202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3129895>, 검색일자: 2021. 10. 6.

58) 2020년도 예산안에 처음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여 2021년 법령화한 것임(출처: Légifrance, “LOI n° 2019-1479 du 28 décembre 2019 de finances pour 2020 (1),” https://www.legifrance.gouv.fr/loda/article_lc/LEGIARTI000039793153/, 검색일자: 2021. 11. 23.)

59)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1), p. 23.

60) POLITICO, “France starts scouring social media to catch tax fraudsters,” 2021. 2. 19., <https://www.politico.eu/article/france-starts-scrapping-social-media-to-catch-tax-fraudsters/>, 검색일자: 2022. 3. 21.

정보를 구분하여 보관 기간도 다르게 설정함

- 수집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식별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지리적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함
 - 분석된 웹페이지 소유자의 식별 데이터
 - 글, 이미지, 사진, 소리, 신호 또는 비디오에 해당하는 지리적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리적 위치 식별에 특화된 검색 엔진 및 지리적 위치 데이터베이스와의 상호 참조 시스템을 설정함
 -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는 수집 후 5영업일 이내에 파기되어야 하며, 일반 정보는 수집일로부터 최대 30일간 보관할 수 있음
-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별도로 데이터 포털(data.economie.gouv.fr)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에서 생성한 공개 데이터에 대하여 국민들의 접근 및 사용을 허용하는 시스템임⁶¹⁾
- 행정, 국가예산, 공공회계, 소비, 경제, 기업, 재정, 산업 및 서비스, 공공시장, 연금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과 관련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공개함
 - 데이터 포털은 앞서 언급한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에서의 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조치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각종 통계 데이터 이외에도 그래픽 디자인, 지도, API 등을 제공함⁶²⁾

라. 호주

- 호주 국세청(ATO)과 호주 통계청(ABS)이 체결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호주 통계청은 국세청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세금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⁶³⁾

61) data.economie.gouv.fr, “Accueil,” <https://data.economie.gouv.fr/pages/accueil/>, 검색일자: 2021. 10. 18.

62) data.economie.gouv.fr, “Notre démarche,” <https://data.economie.gouv.fr/pages/demarche/>, 검색일자: 2021. 10. 18.

- 호주 통계청은 호주 산업, 호주 기업 수, 소규모 지역의 개인 소득 추정치, 소규모 지역에 대한 임금 및 급여 등에 관한 통계를 생성할 목적으로 국세청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음
- 호주 국세청(ATO) 역시 호주 통계청(ABS)과 체결한 파트너십을 통해 통계청의 다중기관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Multi-Agency Data Integration Project, MADIP) 및 사업 종단면 분석데이터 환경(Business Longitudinal Analysis Data Environment, BLADE)을 이용하여 국세 행정에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음⁶⁴⁾
 - 호주 통계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통계를 게시하는 것 외에도 호주의 중요한 결정을 위한 통합된 데이터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
 - 통계청이 제공하는 유료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고도로 기밀화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음
 -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집계 데이터를 제공함
 - 통계청은 기존의 통합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만족할 만한 데이터를 얻지 못한 경우 맞춤형 데이터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
 - MADIP 및 BLADE와 같은 기존 데이터 자산을 통합하여 맞춤형 데이터를 생산함
 - 통계청 데이터를 다른 정부기관 조직이 보유한 데이터와 통합하여 데이터를 생산함
- MADIP는 호주 통계청이 시간 경과에 따른 건강, 교육, 정부 지출, 소득 및 세금, 고용, 인구 통계 등에 대한 정보를 결합한 안전 데이터 자산임
 - MADIP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통계청이 관리하는 엄격한 평가 및 승인 프로세스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63) 호주 국세청, "Other government tax-related information," <https://www.ato.gov.au/About-ATO/Research-and-statistics/Tax-and-superannuation-statistics/Other-government-tax-related-sites/>, 검색일자: 2022. 1. 27.

64) 호주 통계청, "Access and services," <https://www.abs.gov.au/about/data-services/data-integration/access-and-services>, 검색일자: 2022. 1. 27.

- 프로젝트에 MADIP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데이터 관리자로부터 데이터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해당 프로젝트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함
- 관련 기관의 법률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승인된 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접근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할 법적 의무가 있음

□ 통계청은 보다 구체적으로 Fives Safes 프레임워크에 의한 평가를 통해 공개된 정보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프레임워크의 다섯 가지 요소는 안전한 사람들, 안전한 프로젝트, 안전한 설정, 안전한 데이터, 안전한 출력을 말함

- 안전한 사람들이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권한 유무의 조건은 기밀유지 및 데이터 사용 조건에 대한 교육 이수 여부 그리고 데이터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말함
- 안전한 프로젝트란 데이터가 적절한 목적에 사용이 되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마이크로데이터에 접근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수행 중인 프로젝트의 연구목표, 공익성, 규정 준수 여부를 설명하여야 함
- 안전한 설정이란 data lab 가상 또는 현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폐쇄환경의 구축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한 로그인 및 모니터링 기능이 해당됨
- 안전한 데이터란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없도록 통계청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
- 안전한 출력이란 데이터 공개 전 최종 확인을 하는 것으로, 공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호주 정부는 MADIP 데이터 자산 사용 및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2017년 DIPA (Data Integration Partnership for Australia)를 구축하였음⁶⁵⁾

65) 호주 국무총리실, "integration-partnership-australia," <https://www.pmc.gov.au/public-data/data>

- DIPA는 호주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친 통찰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20개 이상의 영연방 기관 간 범정부적 협력을 통한 데이터 통합을 말함
 - DIPA의 구축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음
 - DIPA를 통해 통합된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책 분석 및 연구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기관에 익명화된 데이터만을 제공함
- 사업 중단면 분석데이터 환경(Business Longitudinal Analysis Data Environment, BLADE)은 세금, 무역, 지적 재산권 데이터를 통계청 설문 조사 정보와 결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호주 경제 및 기업 성과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도구임
- BLADE를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업의 운영 성과, 혁신, 일자리 창출, 경쟁력 및 생산성을 주도하는 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함
 - BLADE는 통계 및 연구 목적으로만 공개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 가능함
 - BLADE 정보는 「인구 조사 및 통계법 1905(Census and Statistics Act 1905)」에 의해 보호됨
 - BLADE에는 사업자 등록, 사업 활동 명세서, 사업 소득세, 종량제, 사업장의 위치, 상품 수출데이터, 상품 수입데이터, ABS 경제활동 조사, ABS 비즈니스 특성 조사 등의 데이터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호주 통계청은 통합 데이터 생산에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관리를 위해 법적 보호,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표준 생성, 안전한 데이터 처리 관행을 준수하고 있음
- 통계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1988(Privacy Act 1988)」, 「호주 개인정보 보호 원칙(Australian Privacy Principles)」, 「호주 정부 기관 개인정보 보호 코드(Australian Government Agencies Privacy Code)」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음

- 「인구 조사 및 통계법 1905(Census and Statistics Act 1905)」에 따라 통계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의 경우 개인이나 사업체가 식별 가능한 상태로는 공개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국세청의 모든 데이터 통합 활동은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호주 연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통합하기 위한 일곱 가지 수준의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됨
 - 원칙 1. 데이터를 전략적 자원으로 취급하여 데이터를 설계 및 관리하여야 함
 - 원칙 2. 통계 데이터 종합에 사용된 소스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안 및 기밀 유지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짐
 - 원칙 3. 각 통계 데이터 통합 제안에 대해 책임을 지는 통합 기관이 지명됨
 - 원칙 4. 통계 통합은 대중에게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 원칙 5. 통합된 통계데이터는 통계 및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원칙 6. 데이터 통합에 사용되는 정책 및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원칙 7. 대중이 연방 정부의 데이터가 통계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인지하도록 공개하여야 함

□ 2020년 12월 9일 「데이터 가용성 및 투명성 법안(Data Availability and Transparency Bill 2020)」이 의회에 제출되어 현재 계류 중임⁶⁶⁾

- 해당 법안은 데이터 관리인이 공공데이터를 인증된 사용자와 공유하는 방식을 설정하고 해당 공공 부문 데이터 공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하기 위함임
 - 법안은 데이터 공유 규제 프로세스를 감독할 새로운 독립적 규제 기관인 데이터 커미셔너와 커미셔너를 지원하는 자문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 통합 및 이용 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과의 관계에서 데이터 공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타 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 데이터 침해가 발생된 경우 통계청은 데이터 침해 계획(Notifiable Data Breaches

66) 2022년 1월 27일 기준

scheme)에 따라 대응함⁶⁷⁾

- 「개인정보보호법 1988」이 적용되는 모든 조직이나 기관은 데이터 침해가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경우 해당 개인에게 침해 사실을 알려야 함
 - 데이터 침해의 예로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기기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개인정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한 경우, 개인정보를 잘못된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등이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1988」은 개인의 이름, 서명, 주소, 전화번호 또는 생년월일, 인종, 출신, 범죄기록, 건강 및 유전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 신용정보, 사진, 인터넷 IP주소, 음성 및 얼굴 인식이 가능한 생체정보, 모바일 장치의 위치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 데이터 침해가 일어난 경우 호주정보위원회(OAIC)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침해가 발생된 조직 또는 기관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데이터 침해에 대한 설명
 - 관련된 정보의 종류
 - 개인이 데이터 침해에 대해 대응하여 취하여야 할 권장사항

67) OAIC, "About the Notifiable Data Breaches scheme," <https://www.oaic.gov.au/privacy/notifiable-data-breaches/about-the-notifiable-data-breaches-scheme>, 검색일자: 2022. 1. 27.

Ⅲ. 빅데이터 수집·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의 정립이 요구됨에 따라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정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3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9일 통과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음⁶⁸⁾
- 데이터3법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등 세 가지 법률을 통칭함
- 데이터3법은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개정되었음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효율화
 -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

6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이터3법」,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검색일자: 2022. 1. 5.

1) 「개인정보보호법」

가) 개정의 이유

-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와 신사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 시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규범의 정립이 필요함
 - 기존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본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데이터 이용 활성화의 지원에 한계를 가졌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가명정보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기존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였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제6장에 신설함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여 일원화함⁶⁹⁾
 -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가 온라인, 오프라인 관리 감독에 따라 구분되어 있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기능이 있는 정부위원회로,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시정권고 권한이 있었음
 - 행정안전부는 공공·민간(오프라인)을 관리 감독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감독기관이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온라인)을 관리 감독하고 「정보통신망법」상 감독기관이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선, 정책 수립, 권리 침해

69)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제2조

- 조사,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개인정보 침해 등 사항을 심의·의결함⁷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보호포털 및 개인정보 보호 국제협력센터, GDPR 대응지원센터를 운영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설립하고, 자료제출권 및 검사권을 위탁함⁷¹⁾

나) 주요 내용

- 개인정보의 범주에 가명정보를 포섭함으로써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함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로 정의함⁷²⁾
 - 가명처리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함

- 현행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도록 함⁷³⁾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개선 및 관련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구제·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조정 등 사무를 수행함⁷⁴⁾

70)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8, 제7조의9

71)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소개」, <https://privacy.kisa.or.kr/counsel/privacy/InfoUse.do?tab=tab1>, 검색일자: 2022. 1. 10.

7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73)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

74)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8

-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을 허용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⁷⁵⁾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가명정보 데이터 활용을 제고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함⁷⁶⁾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⁷⁷⁾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⁷⁸⁾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개정의 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75)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

76)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77)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

78)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및 제28조의6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중복조항을 정비하고 법령 체계를 정비함
 - 개정을 통해 과거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함
 -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함

나) 주요 내용

- 「정보통신망법」 제4장에서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이 필요한 경우 접근 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이유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⁷⁹⁾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⁸⁰⁾
- 「정보통신망법」 제6장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에 관하여 규정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⁸¹⁾

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8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고시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음⁸²⁾
-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6장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및 비밀 등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
 -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을 금지함⁸³⁾
 -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됨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여서는 안 됨
 -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됨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⁸⁴⁾
- 「정보통신망법」 제10장을 통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⁸⁵⁾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킨 자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⁸⁶⁾

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8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가) 개정의 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금융분야에서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 등에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이 기대됨
 -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세계적 환경변화를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고자 함
 -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여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혁신하고자 함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인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도입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제를 선진화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함
 - 가명처리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한 개인

신용정보를 말함⁸⁷⁾

〈표 III-1〉 정보 종류에 따른 활용 가능 범위

	개념	활용가능 범위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내 활용 가능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가능 ① 통계작성(산업적 목적 포함) ②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③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복원 불가능할 정도로) 조치한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검색일자: 2022. 1. 6.

-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
 -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⁸⁸⁾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함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며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⁸⁹⁾

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내지 제16호

8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9호의2

8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2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함⁹⁰⁾
- 신용정보회사 등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함
 - 신용정보회사 등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된 본 법에 의해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함⁹¹⁾
 - 본 법에 의해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 또는 그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로 전달하여야 함⁹²⁾
- 신용정보회사 등은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회사 등이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⁹³⁾
- 금융위원회는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 간 결합 및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함⁹⁴⁾
 -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함⁹⁵⁾

9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3

9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9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9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9호의3

9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2항 제1호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도입함
 -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⁹⁶⁾
- 빅데이터 분석·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정함
 - 신용정보회사 등은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여야 함⁹⁷⁾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통해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을 말함⁹⁸⁾
 - 신용정보회사 등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⁹⁹⁾
 -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보유 기간 및 파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¹⁰⁰⁾
 - 신용정보회사 등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안 됨¹⁰¹⁾

9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2항 제2호

9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9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9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5 제1항

9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0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

- 신용정보회사 등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그 가명정보를 회수하여 처리를 중지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함¹⁰²⁾
- 본 법에서 정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처리·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
 - 본 법에서 정한 예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¹⁰³⁾
 -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¹⁰⁴⁾
 - 신용정보회사 등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¹⁰⁵⁾
-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개인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됨
 -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¹⁰⁶⁾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정을 요구받으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시정을

1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6항

10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7항

10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 제1호의2

10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 제1호의4

10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10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5항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¹⁰⁷⁾

4) 데이터 이용 관련 기타 법제

- 그 외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법률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정부부처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시 등 행정규칙도 개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험과 위치정보의 산업적 이용 간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
-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규제제도, 위치정보주체의 권리,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위치정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을 말함¹⁰⁸⁾
-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함¹⁰⁹⁾

10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6항

10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0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함¹¹⁰⁾
-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¹¹¹⁾
 - 예외의 경우로는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 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 그리고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임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수집 등에 관한 동意的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음¹¹²⁾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음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및 본인 개인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에 관한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음

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정보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그 수집의 범위,

1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11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1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취급,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¹¹³⁾
 -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함
-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인 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됨¹¹⁴⁾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됨¹¹⁵⁾
 -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함¹¹⁶⁾
 -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음¹¹⁷⁾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11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1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15)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1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11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

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함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관리지침,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제한 사유,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¹¹⁸⁾
-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¹¹⁹⁾
 - 공공기관은 제28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18조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안 됨
 - 공공기관의 장은 특정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음
 - 이용자가 공공데이터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11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1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데이터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행정규칙 등

- 각 공공기관은 행정규칙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보호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의 형태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이 있음
 - 여타 경찰청 예규 및 각 부처의 훈령의 형태가 있음

〈표 III-2〉 개인정보 보호 관련 행정규칙

행정규칙명	법령종류	행정규칙명	법령종류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 세부지침	국토교통부훈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기상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기상청훈령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농림축산식품부훈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문화체육관광부훈령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법무부훈령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병무청 개인정보 보호 관리규정	병무청훈령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산림청훈령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중소벤처기업부훈령

〈표 III-2〉의 계속

행정규칙명	법령종류	행정규칙명	법령종류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경찰청예규	통계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통계청예규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안전부훈령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환경부훈령

자료: 개인정보보호포털, 「행정규칙」, <https://www.privacy.go.kr/inf/pol/adm/ruleList.do>, 검색일자: 2021. 1. 10.

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과세자료의 제출·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제출방법·수집·협조·관리 및 활용,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과세자료란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함¹²⁰⁾
 -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정함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 승인내역,¹²¹⁾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¹²²⁾ 신용카드 회원별·카드 종류별·카드사별 국내외 연간 신용카드 사용 총 금액에 관한 자료¹²³⁾를 수집함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12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2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5. (가)목
 12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5. (나)목
 12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0

〈표 III-3〉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

분류	제출이 요구되는 기관
제4조 제1호	「국가재정법」 제6조(「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 이하 같음)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제4조 제2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이하 같음)
제4조 제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제4조 제4호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제4조 제5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제4조 제6호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자료: 저자 정리

〈표 III-4〉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종류

분류	제출이 요구되는 과세자료
제5조 제1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특허·등기·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제5조 제2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제5조 제3호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판매·생산·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제5조 제4호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
제5조 제5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보험급여·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으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 중인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을 말한다) 및 제4조 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제5조 제6호	제4조 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자료: 저자 정리

-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¹²⁴⁾
 -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구권이 생기는 것으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함
 - 국세청장은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 시 거래자의 인적사항·사용목적·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야 함
 - 법률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 세무관서의 장은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¹²⁵⁾
- 세무관서의 소속 공무원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¹²⁶⁾
 - 세무관서의 소속공무원은 이를 위반하여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함
 -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세무관서의 소속공무원이 이 법에 따라 제출받은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¹²⁷⁾
 - 금융정보를 제외한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¹²⁸⁾

12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12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12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2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12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나. 국제적 논의의 발전

1) 논의 일반

- 국내법에 도입되지 않은 원칙 또는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세포착 행위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 또는 법률 위반 여부를 폭넓게 판단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가 국내 「개인정보법」 등 관련 법률 또는 지침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님
 - OECD, EU 등의 지침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상세한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참고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국제적 논의는 1973년 미국의 보건·교육·후생부 보고서(HEW)에서 처음 그 개념이 등장하여, 이후 OECD 가이드라인 및 EU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 및 규범으로 발전되어 옴
 - 개인정보 보호는 초기에 ‘프라이버시(privacy)’와 관련하여 도입되어,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발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으로 자리 잡음
 - 프라이버시, 즉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통제(control)’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됨
 - ‘개인정보 보호 원칙(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 FIPPs)’은 ‘통지 및 동의(notice and consent)’가 보호의 기본 틀임¹²⁹⁾
 -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의 질적 적정성의 원칙, 목적 명확성의 원칙, 이용 제한의 원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통지 및 동의’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처리되는 것에 대한 근거나 목적을 고지 받은 후, 정보의 처리를 인지하고 동의하는 것임

129) 이대희,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공정정보원칙(FIPPs)의 융통적인 적용과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 『법조』, 제67권 제1호, 2018, p. 10.

〈표 III-5〉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발전

연도	제목	내용
1973	미국 보건·교육·후생부(HEW) 보고서	공정한 정보관행 규칙을 정하는 입법 권고, 자동화된 개인 데이터 시스템 요건으로 5개의 원칙 제안
1980	OECD 프라이버시 지침 (Privacy Guideline)	① 수집 제한의 원칙 ② 데이터의 질적 적정성의 원칙 ③ 목적 명확성의 원칙 ④ 이용 제한의 원칙 ⑤ 안전성 보장의 원칙 ⑥ 공개의 원칙 ⑦ 개인 참여의 원칙 ⑧ 책임의 원칙
1995	EU 개인정보 보호 지침 (Directive 95/46/EC)	- 데이터 품질과 관련하여 등의 다섯 가지 원칙을 정함: ①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것 ② 특정되고 명시적이며 합법적인 목적으로 수집되며,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 ③ 수집 및/또는 추가 처리의 목적에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과도하지 않을 것 ④ 데이터의 정확성 및 필요한 경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것 ⑤ 데이터 수집 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데이터 목적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보관할 것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동의를 명확하게 제공한 경우 등에 한하여 처리하여야 함
2018	EU 개인정보 보호 규범 (GDPR)	① 목적 제한의 원칙 ② 데이터 적정성 및 비례의 원칙 ③ 투명성 원칙 ④ 보안 원칙 ⑤ 접근·정정·반대의 권리 ⑥ 제3자 이전의 제한 ⑦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제한 ⑧ 자동적 결정에 의한 이전에 대한 권리 ⑨ 독립적인 감독 원칙 ⑩ 개인정보주체의 구제 원칙

자료: 저자 정리

2) 미국의 보건·교육·후생부(HEW) 보고서

□ 미국의 ‘보건·교육·후생부 보고서’는 1973년 ‘공정한 정보 관행 규칙(Code of Fair Information Practices)’ 입법을 권고함¹³⁰⁾

- 자동 개인정보 시스템에 대하여 ‘보호 요건’으로서 법적 효과가 있는 다섯 가지 원칙을 제안함

130)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 Welfare, “Records Computers and the Rights of Citizens,” 1973, <https://www.justice.gov/opcl/docs/rec-com-rights.pdf>, 검색일자: 2021. 10. 25.

- 익명으로 개인정보 기록 보관 시스템을 운영해서는 안 됨
 - 개인이 자신에 관하여 어떤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 개인이 자신의 식별 가능한 정보의 기록에 대한 오류를 정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기록을 생성·보유·이용·배포하는 모든 기관은 사용 목적에 따른 데이터의 신뢰성 및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하여야 함
- 이 보고서는 미국 「프라이버시 보호법(Privacy Act of 1974)」의 기초가 되었고, 이후 OECD 「프라이버시 지침(OECD Privacy Guideline)」의 기초가 됨¹³¹⁾

3) OECD 「프라이버시 지침」

- OECD는 1980년 「프라이버시 지침」을 발간하였고,¹³²⁾ 현재 지침은 2013년에 개정된 것임¹³³⁾
- 기존 미국의 ‘보건·교육·후생부 보고서’가 제안한 5개 원칙을 확대하여 8개의 원칙을 제안함
- ① 수집 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② 데이터의 질적 적정성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③ 목적 명확성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④ 이용 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⑤ 안전성 보장의 원칙(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⑥ 공개의 원칙(openness principle)

131) 이대희(2018), p. 15.

132) OECD,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1980.

133) OECD, “Personal Data Protection at the OECD,” <https://www.oecd.org/digital/ieconomy/oecdguidelinesonthe protectionofprivacyandtransborderflowsofpersonaldata.htm>, 검색일자: 2021. 10. 25.; OECD, *The OECD Privacy Framework*, 2013.

- ⑦ 개인 참여의 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⑧ 책임의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임
- 기본적인 구도는 ‘통지 및 동의(notice and consent)’를 바탕으로 함¹³⁴⁾
 - 개인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처리되는 것에 대한 근거나 목적 등을 고지받은 후, 처리를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OECD는 2013년 기존의 내용에 더하여 ‘위험관리 및 정보처리 상호운용(interoperability)’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추가적으로 다루며, 국가 개인정보 보호 전략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지침을 발표함¹³⁵⁾
- 위험 관리 및 정보처리 상호운용의 두 가지 주제가 추가되었음
 - 위험 관리 측면의 접근방식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용적인 실행에 대해 중점을 둠
 - 정보처리 상호운용의 향상을 통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다룰 필요성이 있음
- 새로운 세 가지 개념이 도입됨
 - 국가 개인정보 보호 전략: 법령의 실행이 본질적인 반면, 오늘날 개인정보 보호의 전략적 중요성은 다면적인 국가적 전략이 높은 수준에서의 정부 협력을 요구함
 - 개인정보 보호 관리 프로그램: 개인정보를 보호를 실행하는 기구를 통한 핵심 실행 기제로 작용함
 - 데이터 보안 위반 통지: 관청 및 개인에 대한 통지를 모두 포함함

4) EU의 지침 및 규범

- EU는 1995년 「EU 개인정보보호 지침(General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입법하였음¹³⁶⁾

134) 이대희(2018), pp. 10~11.

135) OECD, “OECD work on privacy,” <https://www.oecd.org/digital/ieconomy/privacy.htm>, 검색일자: 2022. 3. 16.

- 지침은 개인정보란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정보’라고 규정함¹³⁷⁾
 - 식별 가능한 사람이란 직·간접적으로, 특히 식별번호 또는 신체적·생리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정체성에 특유한 하나 이상의 요인에 의하여 식별이 가능한 사람임
 - EU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별된(identified) 정보와 식별 가능한(identifiable) 정보를 구분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음
 - 식별 가능성을 판단할 때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해당 개인을 식별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함
- 데이터 품질에 관하여 다섯 가지 원칙을 제안함
 - ①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것
 - ② 특정되고 명시적이며 합법적인 목적으로 수집되며,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
 - ③ 수집 및/또는 추가 처리의 목적에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과도하지 않을 것
 - ④ 데이터의 정확성 및 필요한 경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것
 - ⑤ 데이터 수집 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데이터 목적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보관할 것

□ EU는 2018년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입법하여 기존 지침을 대체함¹³⁸⁾

136) EUR-Lex,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1995L0046>, 검색일자: 2022. 1. 28.

137) 문재완,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42권 제3호, 2014, p. 67.

138) Intersoft Consulting,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https://gdpr-info.eu/>, 검색일자: 2021. 10. 25.

- 기업은 GDPR 적용 조건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하고, 명백히 EU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적용되며, 단순 접근 가능성은 GDPR 적용의 근거가 되지 않음¹³⁹⁾
 - 첫째, EU 내에 사업장(establishment)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둘째, EU 거주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거주자성), 셋째, EU 거주자의 EU 내 행동을 모니터링하여야 함
 - 법령 위반 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EU 내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EU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기업도 주의가 필요함¹⁴⁰⁾
- EU의 지침(directive)과 규정(regulation)은 각 회원국의 구체적인 입법 의무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으며, 지침에서 규정의 형식으로 입법한 것에 의의가 있음
 - 지침은 특정한 취지나 목표만을 명시하고 구체적 구현은 개별 회원국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회원국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다루는 것임
 - 규정은 시행규칙을 비롯해 해당 법규 일체를 모든 회원국들에 일괄적으로 직접 적용하여 동일한 내용의 단일 법률을 공유하는 것임

〈표 III-6〉 EU 95/46/EC 지침과 GDPR의 차이점

분류	95/46/EC	GDPR
기업의 책임	개인정보 최소 처리, 처리목적 통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 담당관 지정 • 개인정보 영향 평가 도입
정보주체의 권리	열람청구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 확장 및 명문화 • 개인정보를 이전할 권리 등 새로운 권리 추가
과징금 부과	회원국별 자체 법규에 따라 부과	모든 회원국이 통일된 기준으로 부과

자료: GDPR 대응지원센터, 「GDPR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https://gdpr.kisa.or.kr/gdpr/static/point.do>, 검색일자: 2021. 10. 21.; 김상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139) GDPR 대응지원센터, 「GDPR 적용대상 및 범위」, <https://gdpr.kisa.or.kr/gdpr/static/applyTo.do>, 검색일자: 2021. 10. 21.

140) GDPR 대응지원센터, 「GDPR 정의 및 제정목적」, <https://gdpr.kisa.or.kr/gdpr/static/whatIsGdpr.do>, 검색일자: 2021. 10. 21.

- EU GDPR에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개인정보 영향 평가(Data Protection Impact Test)’와 ‘유럽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가 있음
- 개인정보 영향 평가란 개인정보의 처리를 요구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프로그램, 기업·기관의 활동에 대해, 고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은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을 미리 식별하고 그에 따른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임
 -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개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프로파일링 활동
 -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처리 활동
 - CCTV나 공공장소의 비디오 감시, 드론을 활용한 감시 등 공공장소에 대한 체계적 감시 활동
- 유럽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는 GDPR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EU 기구로 EU 내 개인정보 보호 규칙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EU 개인정보감독 기관 간에 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¹⁴¹⁾
 - EU 각 회원국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관의 대표와 유럽 개인정보 보호 감독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유럽위원회도 EDPB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음¹⁴²⁾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판례

가.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 근거

- 판례는 일반적으로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17조를 근거로 하여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파악하고 있음

141) EDPB, “Who we are,” https://edpb.europa.eu/about-edpb/about-edpb/who-we-are_en, 검색일자: 2022. 1. 28.

142) 김상현(2018), p. 116.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판시로 일관하고 있음¹⁴³⁾
- 대법원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를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보고 있음¹⁴⁴⁾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 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임¹⁴⁵⁾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임
 -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함
 -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자료 공개는 위법함
-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¹⁴⁶⁾
 - 교육정보시스템(NEIS)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음

나. 개인정보 해당 여부

〈표 III-7〉 개인정보 보호 대상으로 판시한 판례

개인정보 대상 분류	판단 근거
게임 아이디 및 비밀번호	가상공간에서 개인의 인격을 표상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	그 자체로 사용자를 식별 가능하거나, 관련이 있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사용자 식별 가능
휴대전화 IMEI와 USIM 일련번호	가입자정보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

143) 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8헌가2 결정

144)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145)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146)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425(병합) 결정

〈표 III-7〉의 계속

개인정보 대상 분류	판단 근거
트위터 정보 (이름, 아이디, 사용자 고유번호, 사용자가 작성한 전체 트윗의 수 등)	각 정보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와 해당하지 않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으나, 트위터 정보의 특징,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판단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대학교수의 개인정보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이미 공개된 신상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

자료: 저자 정리

- 판례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¹⁴⁷⁾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안별로 개인정보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음
- ‘게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식별번호는 실제 공간과는 달리 익명성이 통용되어 행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공간에서 그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한다고 할 것이므로,¹⁴⁸⁾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함¹⁴⁹⁾
 -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¹⁵⁰⁾
 -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 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함
 - 설령 뒷자리 4자만으로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이 있는 다른 정보(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있음
- 하급심 판례는 ‘IMEI와 USIM 일련번호’는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가입자정보에 나타난 다른 정보와 어려움 없이 쉽게 결합됨으로써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되므로

147) 2020년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정의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로 이관함

148)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1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6나12182 판결

15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0고단5343 판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¹⁵¹⁾

-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다른 정보를 구한다는 의미이기보다
 다는 구하기 쉬운지 어려운지와는 상관없이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함
 - 기기나 특정 카드에 부여된 고유번호 정보를 가지는 휴대폰이 어느 개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순간부터 위 각 번호는 ‘특정 개인이 소유하는 휴대폰의 기기 번호 및 USIM
 카드의 일련번호’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게 됨
-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개인과 관련된 정보이기만 하면 개인정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쉽게 결합’이라는 요건을 ‘어떻게든 결합할 여지가 있으면’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며 비판하는 견해도 있음¹⁵²⁾

□ 트위터(Twitter) 사가 빅데이터 업체에 제공한 트위터 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 트위터 정보의 특징을 고려하는 것과 더불어, 각 트위터 정보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전
 체적으로 개인정보로 취급하여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함¹⁵³⁾

- 트위터 사용자의 실명 활동도 가능하고, 트윗 글에는 개인적 신념과 인격이 반영되고
 다른 트위터 정보와의 결합하여 특정 가능하며, 수사기관 또한 트위터 정보를
 기초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사용자를 특정하였고, 특히 위치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 트위터 가입 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형적인 개인식별정보의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 사용자가 자신의 동일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실명으로 트위터 활동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음
 - 트윗 또는 리트윗 글에는 사용자의 개인적 신념과 인격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를 팔로워 및 팔로잉 내역 등 다른 트위터 정보와 결합하면 사용자의 사회적

1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단5343 판결

152) 전승재·권현영,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관한 4개국 법제 비교분석」, 『정보법학』, 제22권 제3호, 2018, p. 187.

153)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지위, 신분 등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트위터 아이디와 동일한 아이디 사용자의 실명, 전화번호 등 전형적인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기초로 결국 사용자를 특정하였으므로, 적어도 트위터 아이디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트위터 사용자가 '위치 공개하기'를 선택할 경우 트위터 사로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전송되며, 트위터 사로부터 빅데이터 업체가 제공받는 트위터 정보에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위치정보, 사진 및 동영상 등은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들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함
-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트위터 정보를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로 취급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함
 - 각 트위터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트위터 정보의 양과 다양성, 각 트위터 정보의 분리가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함
 -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함
- '대학교수의 개인정보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그 정보를 유료로 제공한 사안'에서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¹⁵⁴⁾
- 해당 사건에서 대학교수의 사진, 성명, 직업, 학력, 경력 등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전제에서, 해당 정보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공개된 개인정보이므로 그 내용이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154)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법성 판단

-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한 사안에서, ‘인맥지수’ 제공행위는 위법하고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제공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¹⁵⁵⁾
- ‘다수의견’은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함
 - ‘반대의견’은 인맥지수 산출에 사용된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의 성격, 산출 방법의 합리성 정도, 필요성과 그로 인해 달성될 공적인 가치의 필요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사들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함
-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적 존재인 변호사들의 지위, 사건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웹사이트 운영자의 서비스 제공행위가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시함
- ‘대학교수의 개인정보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그 정보를 유료로 제공한 사안’에서 영리 목적만으로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비교형량을 통하여 해당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함¹⁵⁶⁾
- 정보처리자가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므로 위법하지 않음
 -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 내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익의 비교형량을 하여야 함

155)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판결

156)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함
 - 해당 판례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시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¹⁵⁷⁾
- 위법한 개인정보 취득 행위를 구성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개인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에 동의할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판시함¹⁵⁸⁾
-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판단할 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자체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게 된 전 과정을 살펴본다. 거기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수집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수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또한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특히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포함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크롤링(crawling) 방식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제작한 내용을 복제하여 서버에 저장한 후 이를 게재하는 행위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

157) 대법원, 「대법원 선고(2014다235080 공개된 개인정보의 영리목적 수집,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관련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B0%B3%C0%CE%C1%A4%BA%B8&searchOption=&seqnum=385&gubun=702>, 검색일자: 2022. 4. 5.

158)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¹⁵⁹⁾

- 사안에서 문제되는 행위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제작한 내용을,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크롤링 방식에 의하여 웹페이지의 HTML소스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게재된 채용정보를 모두 복제한 후 서버에 저장한 행위임
 - 이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으므로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¹⁶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¹⁶¹⁾
- 통상적으로 크롤링하는 경우 크롤링하는 주체를 명시하고 크롤링한 정보를 웹페이지에 나타낼 경우 출처를 밝히면서 링크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명시 등을 하지 않음
 - 크롤링이란 크롤러(crawler)라는 자동화된 방법으로 지정된 특정 웹사이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각종 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이를 별도의 서버에 저장하는 기술을 의미함

3. 개인정보의 정의 및 관련 쟁점

가.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특정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위하여 정보의 주체가 '살아 있는 자연인'이어야 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가명정보이어야 함¹⁶²⁾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정보로 식별정보, 식별가능 정보 및 가명정보로 분류하고 있음¹⁶³⁾
-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의함¹⁶⁴⁾

159) 서울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2019365 판결

160)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제2항

161)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16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163)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다)목

164) 문재완(2014), p. 56.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식별정보, 식별가능정보 및 가명정보임
- 첫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 둘째,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식별가능정보)
 -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셋째, 위 두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함¹⁶⁵⁾
 - 가명처리한 경우 그러한 가명은 특정인과 연결하게 해 주는 식별도구이기도 하므로, 재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개인정보의 대상에 포함됨¹⁶⁶⁾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가명처리된 정보도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으로 편입되어, 개인정보의 보호의 영역 밖에 있던 정보를 가명정보로 포함시킴

〈표 III-8〉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분류 변화

분 류	개인정보 해당 여부	
	개정 전	개정 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식별) 정보	○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식별 가능) 정보		
가명정보(가명처리 ¹⁾ 를 한 정보)	×	
익명 처리된 정보 ²⁾	×	

주: 1)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 익명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처리하여야 함(개정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7항)

2)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개정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

자료: 저자 정리

165)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166) 김희정, 「가명정보 미동의 처리의 기본권 침해 검토」, 『법학논총』, 제45권 제1호, 2021, p. 41.

-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외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라는 개념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민감정보는 개인정보의 일종이지만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의 구성요소일뿐임¹⁶⁷⁾
 -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임¹⁶⁸⁾
 - 대통령령은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함¹⁶⁹⁾
 -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임¹⁷⁰⁾
 - 대통령령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로 규정함¹⁷¹⁾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상 개인정보를 행태정보 및 평가정보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음¹⁷²⁾
 - 행태정보는 ‘특정’ 소비자의 소비행태의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것임
 - 평가정보는 정보 주체에 대한 제3자의 의견 내지 평가로 생성되는 것으로 평가 대상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임
 - 개인정보처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결국 평가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주체의 인격권의 충돌로 나타남

167) 문재완(2014), p. 57.

168)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169)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

170)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17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172) 문재완(2014), pp. 58~5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예시를 제공하고 있음

- 개인정보는 그 개념정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법적 판단이 개별적 사안마다 필요함
- 성명·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전형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호·성향정보(물품 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법적정보(재판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소득정보(이자소득, 사업소득), 습관 및 취미정보(흡연 여부, 음주량)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됨

〈표 III-9〉 개인정보 유형에 따른 예시

구분		내용
인적사항	일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등
	가족정보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정보 등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얼굴, 홍채, 음성, 유전자정보, 지문, 키, 몸무게 등
	의료·건강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의 신체검사정보 등
정신적 정보	기호·성향정보	도서·비디오 등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내면의 비밀정보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
사회적 정보	교육정보	학력, 성적, 출석상황,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병역정보	병역여부,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근무부대, 주특기 등
	근로정보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등
	법적정보	전과·범죄 기록, 재판 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등
재산적 정보	소득정보	봉급액, 보너스 및 수수료,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신용정보	대출 및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신용평가정보 등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기타 정보	기타 수익정보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휴가, 병가 등
	통신정보	E-Mail 주소, 전화통화내역, 로그파일, 쿠키 등
	위치정보	GPS 및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여부,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도박성향 등

자료: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의 이해」, <https://www.privacy.go.kr/nns/ntc/inf/personalInfo.do>, 검색 일자: 2021. 3. 31.

나. 관련 쟁점

- 개별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검토의 대상은 국세청이 과세 자료(근거)로 삼기 위하여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 및 개시 등의 근거로 삼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행위임
 - 세무 행정의 측면에서 국세청의 빅데이터 자료의 이용 범위와 관련하여 개별 정보 자체의 「개인정보보호법」적 위법성 판단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이에 대한 국세청의 향후 제도 및 대응 방향을 시사하고자 함
 - 국세청이 조세범칙 사건을 개시하기 위하여(범죄 인지 등) 수집·이용하는 빅데이터 정보의 증거능력(위법수집증거능력) 및 독수독과의 원칙 등 「형법」상 증거법칙이 문제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음
 - 위법하게 수집·이용된 빅데이터에 기초한 증거자료의 증거능력 문제는 개별 정보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형사법적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임

- 개별 정보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보를 유형화하여 각 대상 정보가 먼저 개인정보의 정의 개념에 포함되어 개인정보보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적법성을 판단함
 - 문제되는 국세청의 행위는 과세포착 행위로서, 본 보고서에서 과세포착 행위란 과세 근거, 세무조사 개시 근거,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 개시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함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기본법·일반법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¹⁷³⁾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위주로 살피고, 이외에 문제될 여지가 있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함
 -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개인정보가 적용 대상이고 모든 정보주체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법의 수범자 역시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임

173) 김현경, 「개인정보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소고」, 『성균관법학』, 제28권 제1호, 2016, pp. 39~40.

- 또한 관련 법령이 제·개정 기준으로 작용하고, 제도 및 정책의 통일성·체계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영역의 입법 공백을 치유하는 기능 또한 발휘한다는 점에서 기본법적 성격도 지니기 때문임

□ 개별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만이 그 대상이 되며, 1단계로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함¹⁷⁴⁾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¹⁷⁵⁾
- 개인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며,¹⁷⁶⁾ 이는 대상이 되는 정보·데이터를 소유한 자(또는 관리자)가 누구인지와는 별개의 문제임
 - 데이터의 소유에 대하여 데이터 오너십(ownership)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이는 데이터 소유권·재산권·데이터권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나,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라고 보기는 어려움¹⁷⁷⁾
 - 개인정보주체란 그 정보와 관련하여 식별되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하나의 문제되는 대상에 여러 명의 개인이 식별된다면 각 개인정보주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로 보아야 할 것임

□ 2단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위법성을 판단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¹⁷⁸⁾

174)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175)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176)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

177) 정영진, 「보건 의료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계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제34권 제3호, 2022, p. 203.

178)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표 Ⅲ-10〉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내 용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¹⁷⁹⁾
-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안 됨¹⁸⁰⁾
 - 민감정보의 범위는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은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정보,¹⁸¹⁾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¹⁸²⁾
 -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 및 허용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 처리를 허용함

179)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180)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18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18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IV. 빅데이터 수집·이용 개별 정보별 분석

- 본 장에서는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수집·이용하는 경우를 가정하거나 법령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이용을 개별 정보별로 적법 여부를 판단함
- 개별 정보는 소셜미디어 및 이의 파생되는 정보, 위치정보, 카드사용내역, 사업장·법인 정보, 유상구매 정보 등으로 구분됨

〈표 IV-1〉 개별 정보별 수집·이용의 적법 여부

분류		개인정보 해당 및 수집·이용의 적법 여부 검토 ¹⁾		
소셜미디어 가입 시 제공 또는 생성된 정보		개인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 없이는 불가		
사용자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개인정보 해당 여부	제1유형	식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 정보에 해당
			제2유형	개인정보에 해당
		수집·이용의 적법 여부	공개 게시물	사안별 동의 범위 개별적 판단 및 비교형량
			비공개 게시물	개인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 없이는 불가
이용 내역 정보	사용자의 소셜미디어 사용 시 자동 수집된 위치정보	국세청의 직접 수집	개인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 없이는 불가	
		국세청이 소셜미디어로 부터 제출받아 수집	연구·통계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식별화 작업이 완료된 경우 가능	
	인터넷 접속 정보 파일 (접속기기 정보)	개인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 없이는 불가		
	지도 (구글 맵스, 네이버 지도 등)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불가		
카드 사용 내역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된 카드결제 정보는 징수 목적 수집 불가			
	「과세자료법」에 따라 제출된 카드결제 내역은 징수 목적 수집 가능			

〈표 IV-1〉의 계속

분류	개인정보 해당 및 수집·이용의 적법 여부 검토 ¹⁾
사업장·법인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집·이용 가능
기타 - 개인정보 유상 구매	가명처리된 정보의 경우 통계·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 가능

주: 1)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수집·이용의 위법성을 표시한 것임

자료: 저자 작성

1. 소셜미디어 가입 시 제공 또는 생성된 정보

가. 대상 정보

- 개인정보주체가 소셜미디어(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사이트에 가입 시 직접 제공하는 이름·주소 등의 정보와 회원 가입 시 생성되는 아이디·비밀번호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해당 여부 및 수집·이용의 위법성을 살펴봄
 - 개인정보주체가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가입하여 특정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봄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회원 가입 시 정보 제공에 ‘동의’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봄
- 소셜미디어는 모든 사용자들을 위해 하나의 환경을 증진하는 유형과, 특정한 혹은 유사한 흥미를 가진 사람을 위한 하나의 장소의 역할을 하는 유형으로 구분 가능함¹⁸³⁾
 - 소셜미디어란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대표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183) 성빈, 「빅데이터 업체 SNS 자료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1060 판결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1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p. 10.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등이 있음

- 소셜미디어의 범위를 넓게 파악하는 경우 위키피디아, 유튜브, 링크드인, 버추어 게임 월드,¹⁸⁴⁾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버추어 소셜월드, 세컨드라이프, 데이트사이트, 블로그와 마이크로블로그 등을 포함함¹⁸⁵⁾

나. 개인정보 해당 및 수집·이용의 위법성 여부

- 사용자가 제공한 이름·주소 등의 정보와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만드는 경우, 소셜 미디어 업체가 보유하는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 사용자의 이름·주소 등은 개인정보의 전형적인 유형임
 -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임¹⁸⁶⁾
 - 사용자가 아이디를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¹⁸⁷⁾ 아이디 등이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함
 - 판례 또한 아이디·비밀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¹⁸⁸⁾ 트위터 정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대상으로 포함함¹⁸⁹⁾
 - 또한 판례는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¹⁹⁰⁾
- 사용자의 이름·주소·아이디 등의 정보를 국세청이 직접 수집·이용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국세청이 위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함

184)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이 게임(MMORPG) 등 플레이어들이 아바타로 표현되는 3차원의 환경을 의미함

185) 윤해성·박성훈·박상욱, 「SNS 환경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pp. 46~57.

186)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187)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188)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189)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190)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아이디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해당 웹사이트에 접근 가능하다면 충분히 수집의 가능성이 있음) 국세청이 이를 기술적으로 직접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임
 - 공개된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개인정보주체가 정보를 제공할 때의 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정보 제공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음
- 소셜미디어 업체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국세청에게 제공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소셜미디어 업체의 위법한 행위이며, 이러한 위법한 행위를 국세청이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정보처리자인 소셜미디어 업체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국세청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의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움¹⁹¹⁾
 - 소셜미디어 업체는 개인정보주체에게 사용자의 사이트 활용 및 그와 관련한 부수적 활동 등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았을 것이므로, 소셜미디어 업체가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은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의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이 경우 법 위반의 주체가 정보처리자인 소셜미디어 업체이고, 정보를 제공하는 국세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세청이 위법행위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소셜미디어 업체가 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주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의 동의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고,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와 같이 제3자에 대한 제공 행위는 위법함¹⁹²⁾
 - 소셜미디어 업체가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사이트 이용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라고 보기 어려움

19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192)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

- 소셜미디어 업체가 동의 시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셜미디어 업체에 이러한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강제할 방안은 없음

- 한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더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것이나, 이름·아이디 등의 개인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름·아이디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할 뿐 개인의 사상·신념 또는 사생활과 관련한 보다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임¹⁹³⁾
 - 민감정보는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 이를 처리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음

2. 사용자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가. 대상 정보

- 사용자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서 견해를 표명한 게시물 또는 링크 등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직접 행태 정보를 나타내는 게시물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세청이 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문제됨
 - 해당되는 예로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맛집 평가, 애플리케이션¹⁹⁴⁾의 평가 또는 평점 등이 있을 수 있음

193)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194) 애플리케이션의 댓글 및 작성글은 사용 플랫폼만 구별될 뿐 그 특성은 검색 엔진 사이트 댓글과 같은 것으로 보아 하나의 범주로 묶음

- 구체적으로는 쇼핑몰 등의 평가·평점 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특정한 일시의 구매 행위가 파악되거나, 의견 표명으로 인하여 특정 행위가 파악되는 등의 경우를 의미함
- 현재 국세청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추후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 법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음
- 이러한 개인정보를 별도로 유형화한 이유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 판단 시 다른 관점에서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임
- 첫째,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과세 근거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문제될 수 있음(제1유형)
 - 예를 들어 조세 채무를 체납한 개인이 작성한 게시글 내용을 그 개인에 대한 과세 정보로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음
 - 작성자가 작성한 게시글 내용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개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때(즉, 소셜미디어 사용 중) 자동으로 수집된 위치정보 등은 아래에서 별도의 유형으로 나누어 논의함
- 둘째, 평가·평점 등 게시글을 작성한 자(개인정보주체)에 대하여 비식별화 조치를 거치고, 과세하려는 그 대상자(게시글의 대상이 된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로서 이를 수집하여 그 대상자에 대한 과세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음(제2유형)
 - 개인정보는 그 개념 정의상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¹⁹⁵⁾로서, 자연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 그러나 사업장 또는 법인 그 자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게시글 작성의 대상이 사업장 또는 법인인 경우는 게시글 작성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여부만 문제되므로 제1유형과 결국 같은 논의임
 - 게시글에 있는 각 개인정보주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됨

195)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또한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게시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자 자신의 개인정보 및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공개·비공개 게시글을 나눠서 살펴봄
 - 앞서 살펴본 이름·아이디 등의 전형적인 경우에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에 기초하여 그 동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이와 같이 게시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는 사전적인 동의 여부가 문제되기 어려운 상황임
 - 구체적인 경우의 위법성 판단 시 비교형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까지 고려하여야 함
 - 개별적으로 수집·이용의 위법성 판단 시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사실이 정보주체의 동의의 범위의 외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므로, 두 경우를 다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음
 - 특히 빅데이터의 자료의 대상으로 수집하는 것은 주로 공개된 게시글일 것이므로, 공개된 게시글의 위법성을 별도로 살펴보아야 함

나. 개인정보 해당 여부

-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과세 근거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제1유형), 게시글 그 자체로 개인 식별 또는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뉨
 - 정보주체가 작성한 트위터 내용에는 개인적 신념과 인격이 반영될 수 있어 개인을 특정 가능하다고 본 판례가 있음¹⁹⁶⁾
 - 트위터 사용자의 실명활동이 가능하고, 트윗 글에는 개인적 신념과 인격이 반영되므로 다른 트위터 정보와의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 가능하며 다른 트위터 정보와 결합하면 사용자의 사회적 지위, 신분 등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함
 - 이에 대하여 트위터 내용만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음¹⁹⁷⁾

196)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 쓰는 글의 내용이나 글을 쓰는 스타일 등이 알려져 있는 유명인들의 경우
한하여 트위터 글 내용이 특정인을 표상하게 될 뿐, 일반적인 모든 트위터 글
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함

- 따라서 제1유형의 경우 문제되는 게시글을 분류하여 개별적 사안마다 식별 가능
성을 별도로 판단하여, '식별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게시글 모두를 개인정보의 대상으로 포함한다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
려가 있음
 - 특히 작성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영역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영역에 보다 밀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름·주소 등 전형적인 개인정보 유형과는 달리 그 게시글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수집하게 될 것이고, 개별적·구
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과세 대상자에 대한 정보로서 게시글에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그 대상자에 대한
과세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제2유형), 그 대상자가 '살아 있는 자연인'에 해당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함
 - 개인정보는 그 개념 정의상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¹⁹⁷⁾ 게시글에서
자연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 게시글 작성자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는 제1유형에 포섭됨
 -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과 관련되거나 법인 그 자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
보가 아니므로¹⁹⁹⁾ 게시글 작성의 대상이 사업장 또는 법인인 경우는 게시글 작
성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여부만 문제되므로 제1유형에 포섭됨
 -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197) 성빈(2015), p. 21.

19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19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교재』, 2021, p. 5.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경우(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진과 업무담당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택주소·사진 등) 그 자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여지도 있음

-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납세액 등은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다. 수집·이용의 위법성 여부

- 공개된 게시글의 경우 일률적으로 그 수집·이용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개인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 범위 내인지 및 구체적 사안에서 비교형량하여야 함
 - 공개된 게시글은 개인정보주체가 사전에 공개를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구체적인 활용 형태까지 인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비공개 정보와는 달리 그 수집·이용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공개된 게시글은 작성자가 게시글이 다른 정보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제2유형과 관련하여 작성자의 게시글이 우연히 개인사업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소셜 미디어와 같이 개인의 사적인 일상 및 견해를 공유하려는 목적의 경우에는 보다 비교형량의 가능성이 높음
 -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사회통념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수집·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실무상 보고 있음²⁰⁰⁾
 - 공개된 게시글은 개인적 견해와 여타 빅데이터 분석으로 생성되는 결합정보로서 활용될 여지가 높으므로, 정보처리자가 이런 과정을 거친 정보는 ‘수집’의 여지도 있으나, 정보의 점유자로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음²⁰¹⁾

2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1), p. 180.

- 공개된 정보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보다 자유로운 이용의 논의가 있었으며, 판례 또한 공개된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의 범위 및 알 권리에 무게를 두어 판시한 바 있음
 -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공개된 정보를 별도로 취급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그 핵심은 비식별화 조치였음²⁰²⁾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공개된 정보를 별도로 구분하여 공개된 정보에 비식별화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²⁰³⁾
 - 이에 대하여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며, 비식별화 조치는 다시 그 활용 과정에서 재식별 가능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음²⁰⁴⁾
 - 판례는 공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 및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 내인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음²⁰⁵⁾
 - 사안은 정보주체가 공개한 내용과 유사한 목적 및 내용을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동의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 및 정보주체가 공적인 주체(교수)로서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 비공개 게시글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큼
 - 비공개 게시글로 특정 개인을 식별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정보

201) 김선남·이환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제21권 제4호, 2014, p. 28.

202)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해설서」, 2015, p. 15; p. 33.

203) 다만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2014년에 발표되었으며, 그 이후로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별도로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없음

204) 김선남·이환수(2014), pp. 22~25.

205)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50725 판결

주체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

-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시 게시글의 내용의 정보 수집의 범위까지 동의를 얻는다고 보기 어려워, 동意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개인이 이를 작성하면서 의견이나 개인의 행태정보가 추적되어 국세 행정 관련 정보로서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비공개 게시글의 경우 개인의 사적 의견과 개인정보가 결합되어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으므로, 기술적으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 문제될 가능성이 큼

□ 게시글의 내용이 민감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없는 한 수집·이용할 수 없고, 이 내용을 서비스 사업자가 국세청에 별도의 동의 없이 직접 제공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위법함

○ 게시글의 내용이 민감정보(유전정보, 범죄정보, 인종·민족정보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예외를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집·이용이 허용될 수 없음²⁰⁶⁾

○ 개인정보처리자인 검색엔진 서비스 사업자가 국세청 등에 제공하는 것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 없이는 위법함

3. 이용내역 정보

가. 사용자의 소셜미디어 사용 시 자동 수집된 위치정보

1) 소셜미디어를 통한 위치정보 수집에 관하여 규율하는 현행법

□ 위치정보는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복합적·동태적 특성을 가진 정보임²⁰⁷⁾

²⁰⁶⁾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될 때는 특정인이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게 하므로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의 소비 내역을 파악할 수 있음
 - 일정 기간 동안 수집된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는 프로파일링 작업을 통해 해당 개인의 주요 활동 반경이나 이동방향, 관심사까지도 예측하게 할 수 있음
 - 사회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순기능적 측면을 가짐과 동시에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심각한 역기능도 내포하고 있음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과 사생활 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으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고 함)이 있음
 - 「위치정보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함
 -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집된 개인의 위치정보는 개인의 소셜미디어 가입정보 및 다른 게시물들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위치정보법」에서 정한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함

2) 소셜미디어를 통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행위의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

- 국세청이 과세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집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보관, 활용하는 경우와 국세청이 소셜미디어에 특정인의 위치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표 IV-2>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였음
 - 국세청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출된 개인의 위치정보를 보관·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수집한다면,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수집하여 활용한다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세청이 소셜미디어에 특정인의 위치정보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특정인에 대한 과세의 목적이 아니라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작성 등 연구 목적하에는 비식별화

207)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08. 12., p. 3.

조치가 된 자료를 제출받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표 IV-2〉 소셜미디어를 통한 위치정보 수집의 적법 여부 판단

분류	수집·이용의 적법 여부 검토
국세청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출된 개인의 위치정보를 보관·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수집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정보법」 제15조에 따라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 • 다만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경찰관서의 요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 국세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치정보법」 제15조에서 정한 예외의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에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수집·활용한다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국세청이 소셜미디어에 특정인의 위치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정보법」 제21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다만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및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 조사를 위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특정인의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함 • 국세청은 소셜미디어가 특정인으로부터 과세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면 과세에 이용하기 위해 이를 제출받을 수 없음 • 다만 특정인에 대한 과세의 목적이 아니라 현황 파악을 위한 대한 통계작성 등 연구의 목적에서는 비식별화 조치가 된 자료를 제출받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자료: 저자 작성

나. 인터넷 접속 정보 파일(접속 기기 정보)

- 유선 인터넷 PC의 IP주소는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되는 것이므로, IP주소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추출해 낼 수 있을 때는 「위치정보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됨²⁰⁸⁾

- 과세자료의 수집 대상이 특정 웹사이트의 회원인 경우 웹사이트 회원정보를 통해 개인정보가 특정되고 이것에 IP주소가 결합하여 특정인에 대한 위치 확인이 가능함
 - 이에 국세청이 특정인의 동의 없이 IP주소를 수집한다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지도(구글 맵스, 네이버 지도 등)

- 구글 및 네이버는 GPS기능이 탑재되었거나 Wi-Fi기능이 탑재된 단말기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이동통신 및 Wi-Fi 기지국에 대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수집된 위치정보를 토대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임
 - 「위치정보법」 제18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위치정보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근거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한 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위치정보법」 제21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이에 국세청은 구글 및 네이버 등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정보주체로부터 과세목적의 따라 국세청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가 아니면 위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

라. 카드 사용 내역

- 국세청에서는 카드 사용내역에 관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8)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08. 12., p. 110.

「소득세법」을 근거로 수집하고 있는바 각 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 모두를 과세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기관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자료요구권을 근거로 수집된 카드 정보의 경우 과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됨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세무관서의 장은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카드 정보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표 IV-3〉 참조)
 - 과세자료요구에 따라 카드사별, 가맹점별 결제 금액의 합계가 표시되어 제출되고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항은 제출 시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표 IV-3〉 「과세자료법」에 따라 수집되는 카드 정보

구분	종류	근거 법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되는 카드 정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 승인내역·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법 제5조 동법 시행령 별표 65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 결제 자료	법 제5조 동법 시행령 별표 92 가목
	신용카드 회원 등의 인별·카드종류별·카드사별 국내외 연간 신용카드	법 제5조 동법 시행령 별표 100

자료: 저자 작성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음
- 이에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카드 사용정보의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 목적으로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됨

-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제출된 카드 사용내역은 납세자의 연말소득공제로 그 사용 목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법에서 실시한 수집 목적을 넘어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해석됨
 -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8호에서는 납세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 서류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출할 것을 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된 신용카드 사용정보는 납세자의 연말소득공제에 사용하여 납세자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함이므로 납세자에 대한 과세 목적의 활용은 근거 법의 수집 목적을 넘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불가하다고 해석됨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집되는 카드사 및 가맹점(개별 납세자 정보 미포함)별 카드 사용정보는 과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반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수집되는 개별 납세자의 카드 사용정보는 과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표 IV-4〉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과세자료 활용의 적법 여부 판단

분류	과세 목적 사용의 적법 여부 검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신용카드 사용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세무관서의 장은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을 정하고 있음 • 이에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의 경우는 국세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됨

〈표 IV-4〉의 계속

분류	과세 목적 사용의 적법 여부 검토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된 신용카드 사용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자는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은 제8호를 통해 법 제165조를 근거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에 따라 수집된 신용카드 내역의 경우 제출 목적이 납세자의 연말소득공제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자료로 수집·활용할 수 없다고 해석됨

자료: 저자 작성

4. 사업장·법인에 대한 정보

- 사업장·법인에 대한 정보는 '살아 있는 자연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자유로운 수집 이용이 가능함²⁰⁹⁾
 -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및 법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관련 정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대표자의 이름, 주소 등) 그 정보는 별도로 개인정보에 해당함
 - 단일한 형태의 정보(소셜미디어 정보 또는 이용내역 정보 등 모두 포함)에 수명의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개인정보 별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가 문제됨²¹⁰⁾
 - 앞서 언급한 유형의 개인정보와 사업장·법인의 정보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될 것임

209)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2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1), p. 15.

- 사람이 아닌 사물에 관한 정보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 사물 등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 등을 나타내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는 개인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함
- 특정 건물이나 아파트의 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 건물이나 아파트의 주소가 특정 소유자를 식별하는 데 이용되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²¹¹⁾
-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장에 트럭의 이동 횟수를 통하여 그 사업장의 매출액을 추정하여 과세 자료로 쓰고자 하는 경우, 트럭 그 자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나 지입차주 등의 정보가 식별된다면 개인정보임

5. 기타 - 개인정보 유상 구매

- 국세청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웹사이트로부터 그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구매한다면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살펴봄
 - 개인정보를 수집한 웹사이트가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음
 - 개인정보 수집 시 직접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계 여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명처리한 정보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유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를 최초에 수집한 웹사이트가 개인정보 수집 시 개별 정보 주체로부터 과세목적·수집하려는 항목·이용 기간 등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국세청은 구매한 자료를 과세목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움
 - 웹사이트가 개인정보주체에게 ‘과세 목적 활용’ 등을 제시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동의받는 것을 말함²¹²⁾

2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1), p. 5.

21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그러나 개인정보가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개인정보주체의 재산권이 침해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개인정보주체는 자신의 재산적 손실을 감안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현재 웹사이트에 개인정보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과세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약관을 제시받거나 이에 동의하는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음

- 개인정보주체에게 과세목적 수집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동의받지 않은 경우라도, 수집행위가 개인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가 과세자료로 사용될 것을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면 국세청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정보 형태로 구매하여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²¹³⁾
- 국세청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이를 구매하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처리 가능함²¹⁴⁾
 - 연구, 통계 작성 등 목적에 따른 수집은 개인정보주체의 재산권 등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고 활용을 통한 공익적 기여가 기대되므로 예외적으로 수집 및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로 해석됨
- 이에 부동산 거래의 현 시세를 납세서비스 제고, 공평한 세부담 등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불특정인들의 부동산 거래 자료 등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1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214)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V. 시사점

1. 과세목적 특수성을 고려한 빅데이터 수집·이용 방안

- 빅데이터의 이용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빅데이터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거의 정보 수집 방식과 달리 빅데이터는 다량의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통한 분석으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함
 - 국세청의 빅데이터 사용은 이행 준수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모든 사업 운영을 위한 단일 플랫폼 제공, 스마트 포털 등을 통하여 모든 국세청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
 - 국세청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활용이 궁극적으로 과세 또는 세무조사 행위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 및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빅데이터의 활용에 한계가 있을 것임

- 빅데이터의 경우 여러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조합 및 분석하여 새로운 결과를 얻는 것이므로, 기존 개인정보보호 관련 원칙인 '통지 및 선택' 원칙에만 의존하기 어려움
 - 빅데이터의 경우 데이터를 분석하여 무엇을 발견할지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사전에 적절하게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개인정보 주체도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디에,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것인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 처리에 동의하기도 어려움²¹⁵⁾

215) 이대희(2018), p. 17.

- 사전·사후 동의에서 일반·포괄적 동의로 개념이 확대될 수 있으며,²¹⁶⁾ 이와 같은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요소를 찾아야 할 것임

- 비식별정보 수집의 경우에도 정보를 조합하여 재식별될 위험성이 있으며,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결합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기존의 통지 및 선택만으로는 모든 범위를 다룰 수 없음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의 위험성은 동의 없는 정보 사용, 정보에의 부적절한 접근 외에도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특히, 비식별 또는 전체 데이터로부터 개인이 재식별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²¹⁷⁾

□ 과거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정보의 '사용'을 중심으로 개인 정보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공정성(Fairness)'에 따른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 중 하나는 정보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임²¹⁸⁾
 -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정보주체가 사전에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보의 '수집'에 동의하는 것은 어려움
- 영국의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빅데이터 환경에 따른 목적 제한의 원칙을 위하여 '공정성'에 바탕을 둔 기준을 제시함²¹⁹⁾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의 절차는 공정성을 기준으로 하며 공정성에는 '투명성'이 본질적인 요소임
 - 공정성 여부는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효과와 데이터가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개인정보주체의 기대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함

□ 새로운 기준으로서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빅데이터 관련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여,

216) 계인국, 「빅데이터 시대 전자정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변화와 도전-」, 『안암법학』, 제50권, 2016, pp. 224~225.

217) Leslie E. Wolf, "Risks and Legal Protections in the World of Big-Data,"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 & ethics*, 11(2), 2018, p. 3.

218) 이대희(2018), p. 31.

219) ICO,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nd data protection* 38, 2017, pp. 19~20.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정보 대상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포털을 통해 납세자도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여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²²⁰⁾ 빅데이터 자료가 어떤 식으로 수집·이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움
 - 정보의 공개성 및 접근성의 확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공개적인 정보 유통을 통한 국세청과 납세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으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동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국세통계센터 사이트와 통합 운영하거나 경제·여신·조세 관련 통합 데이터 포털 사이트(재정 관련 통합 사이트)를 구축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음
- 빅데이터 센터가 보유하는 자료 그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이용 정보 대상 범위·목록 또는 비식별 조치된 자료 목록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고, 예외적으로 열거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한하여 비공개 가능하므로,²²¹⁾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을 뿐 공개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님
 - 나아가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²²²⁾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인격 주체성과 관련 있는 개인정보와 인격주체성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인격 주체성과 관련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보다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비식별화 조치를 충분히 취한 후 수집·이용하게 함으로써,²²³⁾ 이러한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충족시켜야 하는 사전적인 의

220)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https://www.privacy.go.kr/wcp/dcl/per/personalInfoFileList.do>, 검색일자: 2022. 3. 11.

2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2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223) 방송통신위원회(2015), p. 15.

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방안이 있음

-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²²⁴⁾ 이와 같이 인격 주체성과 관련 없는 정보는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안이 있음
- 인격 주체성과 관련이 없는 대표적인 정보의 예로, 법인세 과소 납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빅데이터를 통해 수집된 법인의 정보를 과세자료에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고, 자연인이 아닌 법인·단체·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아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가명정보를 말함
 -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²²⁵⁾
 - 자연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한과 달리 법인 정보의 수집에 관하여는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관점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수집이 용이하고 이를 과세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검토됨
 - 예를 들어, 인공위성으로 수집된 법인 소유 화물차량의 개수와 각 운행 횟수(이를 통해 화물처리량 추정 가능) 또는 SNS를 통해 수집된 법인 제품의 누적 판매량 등은 중요한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법」의 보호 대상인 자연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므로 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임
 - 추후 개별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반영하여 과세행정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22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225)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의 이해」, <https://www.privacy.go.kr/nns/ntc/inf/personalInfo.do>, 검색일자: 2022. 3. 18.

-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방식으로 ‘사전 동의(opt-in)’가 아니라 단계적인 ‘사후 동의(opt-out)’의 방식을 보다 활발히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 및 우리나라의 법 해석상 사전 동의를 기초로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왔으나, 이를 사전 동의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후 동의로 그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받은 경우 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²²⁶⁾ 이를 ‘사후 동의’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거나,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사후 동의도 일정한 제한하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포함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사후 동의에 기초하는 방안은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의 발달 단계에 따라 향후 법령 개정 또는 법 해석의 변경을 통하여 사후 동의에 무게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나아가 법령의 개정으로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동의 없이도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이용 단계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이용 후 특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사후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최근 EU GDPR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절차적으로 보장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임
 - 이미 수집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 주체의 입장에서는 그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그 권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보 주체가 개별적으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임
 -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적 보장 및 활발한 이용은 오히려 정보 수집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226)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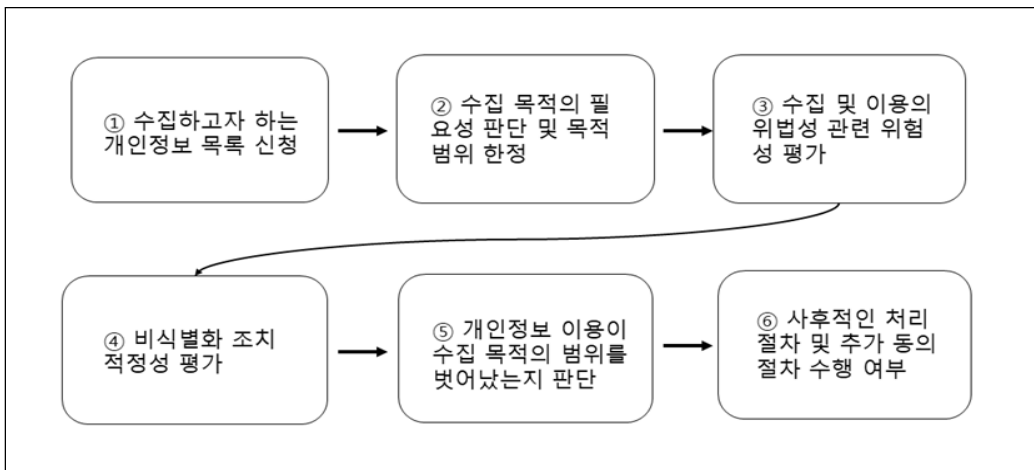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빅데이터 센터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범위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빅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위 법률에 근거한 자료만을 수집하고 있으므로, 빅데이터 센터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법률로써 명확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법률의 제정으로 빅데이터 센터의 적법한 업무 수행 외에도, 개인정보주체 또한 자신의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이용될지 예측 가능함

2.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평가 위원회 및 절차 마련

- 빅데이터 센터 내부 또는 외부에 ‘개인정보 평가 위원회’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빅데이터 센터 내부에 위원회를 설립하여도 외부위원 및 국세청 내 빅데이터 센터가 아닌 다른 부처 소속 직원을 포함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빅데이터 센터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부처로서 위원회를 설립하여 개인정보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것임
-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여부를 확인함
 - 절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 대한 1차적 평가를 거치고, 다음으로는 그 보호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2차적 평가를 거침
 - 앞서 언급한 EU GDPR의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참조하여, 적절성 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가서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함
- 위원회는 빅데이터 센터의 수집 정보에 대한 대상 범위 판단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후적인 단계까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단계별로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구체적인 단계별 평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사전에 확정하여, 이에 대한 평가 및 이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①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목록을 신청하여 수집 대상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여지가 없는지 판단함
 - ② 수집 단계에서부터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정함
 - ③ 수집·이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법성 여부 및 이후 소송 단계에서 위법하다고 판시될 수 있는 여지를 판단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함
 - ④ 비식별화 조치 적정성 평가를 수행함
 - ⑤ 개인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분석 및 그 결과의 활용이 수집 목적을 벗어나는지 판단하고,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벗어나는 용도로 활용되는지 평가함
 - ⑥ 개인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삭제 및 정정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러한 절차 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이를 행사한 개인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지 않고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지 판단함

[그림 V-1] 내부 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평가 단계 제안



자료: 저자 작성

- 위원회는 빅데이터 센터가 내부적으로 수집·이용하는 자료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국세청이 수집·이용하는 정보의 대상 또는 그 정보의 가공은 민감한 문제로,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우려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거나 과세 등에 사용하기가 어려움
 - 내부 평가 위원회를 거치면 오히려 국세청은 정보 수집·이용의 범위를 기술이 허용하는 범위로 넓히고, 위원회를 거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정보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기존의 국세청 내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절차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서는 내부 지침의 일부가 공개되는 것이 필요함
 - 다른 정부 부처는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빅데이터 센터 내부의 개인정보처리 지침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함
 - 또는 법률로서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한편 내부적으로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정보 보유기간을 모두 다르게 설정하는 등 개별 정보별로 보호 및 관리의 범위를 달리하고, 빅데이터 분석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연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음
 - 사전에 데이터를 정보 활용 목적별로 분류하거나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정보 보유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도 단계별로 다르게 설정하여 보다 빅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빅데이터를 활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므로, 데이터 분석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를 상세히 마련하여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는 직원의 책임이 면제되는 등의 규정을 포함함

3. 국세청 내부 데이터 취급 부서 간 통합

- 국세청 내부의 데이터 취급 부서 간 상호작용을 고취하고 기초데이터 및 고급 분석에 관한 내부자원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통합된 부서로의 개편을 고민해 볼 수 있음
- 현재 국세청 내부의 데이터 분석 관련 부서로는 국세통계센터와 빅데이터 센터가 있음
 - 국세통계센터는 본청 기획조정관 산하에 소속되어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작성에 이용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음²²⁷⁾
 -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시스템을 통해 국세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관리·활용하기 위해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국세통계생산·관리 시스템 및 국세통계포털(TASIS)을 포함하고 있음²²⁸⁾
 - 조세·재정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국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현황,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9개 분야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 빅데이터 센터는 본청 정보화관리관 산하에 소속되어 빅데이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빅데이터 분석 및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세청의 기존 노하우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정보분석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²²⁹⁾
-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통찰력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임
 - 빅데이터 분석은 통계값을 얻기 위한 일회적 분석이 아니라 추출된 통계를 바탕으로 추론하여 의사결정을 도출해 내는 것이므로 데이터 마이닝 작업이 필요함

227)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5734&cntntsId=109149>, 검색일자: 2022. 3. 10.

228) 「국세청 통계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6호

229)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7조

- 데이터 마이닝이란 대규모의 데이터 안에서 통계적 패턴이나 규칙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 내는 것을 말함
 -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서는 풍족한 원시데이터의 축적과 축적된 데이터 세트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임
 - 국세통계센터는 데이터 탐지, 분석, 통계 기술능력을 통해 비정형 데이터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시각화된 자료로 가공하는 프로세스를 거쳐 구조화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 국세통계센터가 생산한 자료는 검증된 데이터로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풍족한 고급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빅데이터 센터는 국세통계센터가 실시간으로 생산하는 구조화된 데이터의 존재를 파악하여 통계센터에서 추출한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토대로 목표한 값을 얻기 위한 패턴을 분석할 수 있음
 - 국세통계센터가 생산하는 풍족한 고급 데이터를 기초로 데이터 마이닝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데이터에 의한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솔루션이 개발될 수 있음
- 국세청 본청에 소속된 조직들이지만 사무가 명확히 분장되어 있고 작업 및 인력배치 공간의 분리로 인해 두 센터 간 자원 공유 및 공동 전략 개발이 가능한 환경으로는 평가되지 않음
- 국세청 내부 통계부서와 빅데이터 부서 간 통합 사례에 관하여는 앞서 해외 사례에서 분석한 미국 국세청의 예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미국 국세청은 전략적인 데이터 중심 연구를 통해 징세비용을 줄이고 탈세를 적발할 목적으로 빅데이터 조직이었던 OCA와 통계분석 조직이었던 RAS를 통합하여 RAAS로 개편한 바 있음
- 국세통계센터의 데이터 탐지, 관리, 분석 및 통계 기술 능력과 빅데이터 센터의 문제 식별능력, 데이터 고급 응용기술, 솔루션 모델 구축 능력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생할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음

4. 빅데이터 수집·이용의 목적 확대 및 적극적 활용

- 빅데이터 수집·이용을 과세 목적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납세·복지 서비스 제공 및 국세청 조직 내부의 행정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빅데이터 센터가 기술의 발전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과세 목적 외의 활용은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 공익적 목적 활용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이용의 합리적인 목적 범위 내로 포함되어 활용할 수 있는 대상 정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

- 납세자에 대한 납세 및 복지서비스 등에 빅데이터를 보다 활발히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수립할 때 납세자들의 동향 또는 수요 파악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과세 자료로만 사용하는 것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세 서비스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함
 - 국세청 외에 특허청, 건강보호심사평가원 등도 수집한 개인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위 기관들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이 과세 행위에만 빅데이터 활용을 한정할 필요는 없음
 - 이와 같은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의 위험성을 줄이고, 적법한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 국세청 조직 개선 및 내부 문화 향상 등 행정적인 요소에 활용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빅데이터 정보 수집 방법, 수집 시간 단축 및 데이터 활용의 다양화는 국세청의 의사결정 속도를 단축시키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²³⁰⁾

230) OECD, *Technologies for Better Tax Administration*, 2016, p. 49.

- 기존 수집 정보를 빅데이터 기술을 통하여 사용 가능한 정보로 변화시키고, 납세자와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국세청의 의사 결정 비용을 경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통계 목적으로 비식별화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적법하므로, 빅데이터 센터 또한 연구 및 통계목적의 자료 수집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도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및 EU GDPR 등에서는 연구·통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넓게 인정하고 있음

- EU GDPR 등이 언급하는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발전과 실증,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포함하고 그 주체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까지 포함함²³¹⁾

- 「개인정보보호법」도 이와 유사하게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로 정의함²³²⁾

○ 연구·통계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한정하여 자료가 활용되도록 하고, 그 외에 과세 부과 및 세무조사와 같은 목적에 활용되지 않도록 개별 빅데이터 분석 시 목적에 따른 자료 활용에 철저한 분리가 필요할 것임

- 이와 같이 과세 외의 목적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이용 분리는 국세청 내부의 의지 및 제도 설계로서 가능할 것으로 보임

231) 김현숙, 「과학적 연구목적에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정보법학』, 제24권 제1호, 2020, pp. 119~120.

23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8호

참고문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교재』, 2021.
- 계인국, 「빅데이터 시대 전자정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변화와 도전 -」, 『안암법학』, 제50권, 2016.
-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2016.
- 김상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 김선남·이환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정보화 정책』, 제21권 제4호, 2014.
- 김정숙,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기술 고찰」,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0권 제1호, 2012.
- 김현경,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 통권 72호, 2020.
- _____, 「개인정보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소고」, 『성균관법학』, 제28권 제1호, 2016.
- 김현숙, 「과학적 연구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정보법학』, 제24권 제1호, 2020.
- 김희정, 「가명정보 미동의 처리의 기본권 침해 검토」, 『법학논총』, 제45권 제1호, 2021.
- 문재완,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42권 제3호, 2014.
- 박주석,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마이데이터의 비교연구」, 『한국빅데이터학회지』, 제3권 제1호, 2018.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해설서」, 2015.
- _____,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08.

- 성빈, 「빅데이터 업체 SNS 자료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1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 윤해성·박성훈·박상욱, 「SNS 환경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이대희,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공정정보원칙(FIPPs)의 융통적인 적용과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한 연구」, 『법조』, 제67권 제1호, 2018.
- 이만재,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활용」, 『Internet & Information Security』, 제2권 제2호, 2011.
- 이병욱·김준호·우종필, 「구글 트렌드를 이용한 기업의 매출액 및 주가 예측」,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10호, 2018.
- 전병목·김빛마로·안종석·정재현, 『4차 산업혁명과 조세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전승재·권현영,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관한 4개국 법제 비교분석」, 『정보법학』, 제22권 제3호, 2018.
- 정규언, 「사회변화에 따른 세무행정의 대응: 빅데이터와 AI활용에 대한 국세청과 미국 IRS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세무학 연구』, 제38권 제1호, 2021.
- 정영진, 「보건의료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계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제34권 제3호, 2022.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2021.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1년 3호, 2021.
- 행정자치부·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빅데이터 업무적용 가이드』, 2017.
- ICO,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nd data protection 38*, 2017.
- Kimberly A. Houser and Debra Sanders, “The Use of Big Data Analytics by IRS: Efficient Solutions or End of Privacy as We Know,” *Vanderbilt Journal of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817, 19, 2017.

Leslie E. Wolf, Risks and Legal Protections in the World of Big-Data,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11(2), 2018.

OECD,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1980.

_____, *The OECD Privacy Framework*, 2013.

_____, *Technologies for Better Tax Administration: A Practical Guide for Revenue Bodies*, 2016.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국세청 통계사무처리규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0고단53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2019365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507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단53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6나12182 판결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8헌가2 결정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425(병합) 결정

〈사이트〉

개인정보보호 포털, <https://www.privacy.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s://privacy.kis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
국세청, <https://www.nts.go.kr>
대법원, <https://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https://opendata.hira.or.kr>
특허뉴스, <http://m.e-patentnews.com>
특허빅데이터센터, <https://pbcenter.re.kr>
특허청, <https://www.kipo.go.kr>
파이낸셜 뉴스, <https://www.fnnews.com/news>
한국 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호주 국무총리실, <https://www.pmc.gov.au>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

호주 통계청, <https://www.abs.gov.au/>

GDPR 대응지원센터, <https://gdpr.kisa.or.kr>

data.economie.gouv.fr, <https://data.economie.gouv.fr>

data.gov.uk, <https://data.gov.uk/>

EDPB, <https://edpb.europa.eu>

EUR-Lex, <https://eur-lex.europa.eu>

GOV.UK, <https://www.gov.uk>

Intersoft Consulting, <https://gdpr-info.eu>

IRS, <https://www.irs.gov>

Légifrance, <https://www.legifrance.gouv.fr>

OAIC, <https://www.oaic.gov.au>

OECD, <https://www.oecd.org/digital/ieconomy>

POLITICO, <https://www.politico.eu>

Search Engine Land, <https://searchengineland.com>

TARC, <https://tarc.exeter.ac.uk>

Tax Journal, <https://www.taxjournal.com>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 Welfare, <https://www.justice.gov>

세정연구 22-02

**빅데이터 정보 이용 범위에 대한 법적 연구:
개별 정보별 분석**

발 행 2022년 4월 29일
저 자 정훈·김재경·이나현
발 행 인 김재진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쇄 일지사 044-865-6971
I S B N 979-11-6655-138-3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세정연구 22-02

빅데이터 정보 이용 범위에 대한 법적 연구: 개별 정보별 분석